

이주아동의 인권 증진을 위한 심포지엄

| 일시 | 2011년 11월 17일(목) 14:00-17:30

| 장소 | 부산대학교 제2법학관 대강당(1F)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장 이광영입니다.

이주민 140만 시대,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결혼, 학업, 노동, 난민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도 아시아권부터 유럽 등 폭이 넓으며, 입국 형태도 기간을 정하여 들어온 경우, 아예 귀화하거나 정주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권, 교육권, 행정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공공기관 시스템과 한국 사람들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의 문제도 있습니다. 관련 정부부처와 국회에 의해 꾸준히 법과 제도가 보완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민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와 함께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여 해당 부처에 권고하고 있으며, 2010. 12에는 이주민 자녀들에 대한 교육권 문제로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하였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이주민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05년 10월 국제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프랑스 이민자 2세들에 의해 발생한 소요는 눈여겨 볼 부분이 있습니다. 프랑스정부가 필요에 의해 정책적으로 알제리 등의 국가로부터 받아들였으나, 이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통합 정책이 실패함에 따라 소요의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한국사회에서의 이주민 수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주민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주민 140만 명이 곧 2백만 명, 3백만 명이 될 것입니다. 한국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도 작년의 경우에만 16,312명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책도 중장기적으로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외국의 사례에서 보고 있습니다.

UN에서는 교육문제, 인종문제, 한국사회의 순혈주의 문제 등에 대해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주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며 다문화 관련 '통합적' 성격의 기구를 통한 지속적인 방안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이 이런 면에서 전문가들의 좋은 고견들이 모여져 정책대안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차별이 없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심포지엄에 함께하여 주신 부산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와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11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소장
이 광 영

환영사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

2011년 11월 20일은 우리나라가 UN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이주아동의 인권 증진을 위한 심포지엄”을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와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심포지엄을 위해 자리해주신 참석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본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할 수 있게 애써주신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이광영 소장님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 김명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공공기관, 시민사회, 학계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문화시대 이주아동이 직면한 인권실태를 진단하고 인권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 우리나라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130만 명을 넘어섰고, 다문화가정도 20만 가구에 이르는 등 급속히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주민 자녀의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이제 우리의 다문화쟁점은 이주민의 인권문제에서 이주민 자녀의 권리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그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언어, 신분 등에 관계없이 차별 없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주아동은 피부색이 다르고, 한국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또 부모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놀림과 왕따의 대상이 되고, 사회적 배려와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본 심포지엄이 이주아동의 권리에 관한 사회적 담론을 확대하고, 이주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사회적, 정책적, 학문적 대응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진지하고 열띤 토론을 통해 유익한 정보와 지식을 교류하기를 바라며,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더욱 활발한 학문적·인간적 교류를 이어가셨으면 합니다. 심포지엄에 협력해주신 관계 기관 및 단체의 무궁한 발전과 참석자 여러분 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소장
박 병 현

축 사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와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이주아동의 인권 증진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 심포지엄을 위하여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는 다문화가족들이 급격하게 늘어나 2011년 현재 다문화가족이 약16만에 이르며 수년 내에 20만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이 늘어감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이들을 위한 정책이 조금씩 바뀌어 왔습니다. 우선 우리 사회의 다문화정책은 주로 다문화가족의 결혼이주여성들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과 관련된 것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과 함께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수년 전부터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도입국자녀들이 늘고 있으며, 이주민들의 자녀들 특히 미등록 이주민들의 자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이주아동들과 미등록 이주민 자녀들과 중도입국자녀들의 인권과 관련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인권존중 사회로 나아가는데 일조를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가장 기초는 바로 인권입니다.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정받는 인권이 보장될 때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을 보장받는 사회를 행복한 사회로 생각하고 이를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개최되는 '이주아동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심포지엄'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가장 약한 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행복한 사회를 현실화해 나가는 길인 것입니다.

평소에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현상을 연구하는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와 대구가톨릭대학 다문화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이주아동들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 이주아동의 인권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모든 것들이 비록 작은 소리이지만 멀리 멀리 퍼져 나가 우리 사회에서 이주아동들의 인권이 더욱 증진될 것이며, 이로 인해 어둠에 놓여 있던 이주아동들에게 새로운 빛과 희망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과 사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 소장
김 명 현

프 로 그 램

2011년 11월 17일(목)

◦14:00-14:10	▪ 등록
◦14:10-14:30	▪ 다문화음악회 ▪ 개회사 : 이광영(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소장) ▪ 환영사 : 박병현(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소장) ▪ 축 사 : 김명현(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 소장)
	1부: 이주아동의 교육권 좌장 : 이재식(부산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14:30-15:40	▪ 발표 1: 이주아동 실태조사 결과와 권고 내용 박병수(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과 이주인권팀 사무관) ▪ 발표 2: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김순량(부산광역시교육청 창의인성복지과 장학사) ▪ 토론 : 이병준(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발표 3: 특별한 아시아공동체학교 오명옥(아시아공동체학교 교사) ▪ 토론 : 김재우(무지개청소년센터 다문화역량강화팀장)
◦15:40-16:00	coffee break
	2부: 이주아동의 인권 좌장: 조소영(부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16:00-17:30	▪ 발표 1: 2011 다문화가족 지원 계획 이수정(부산광역시 여성정책담당관실 다문화가정지원과 주무관) ▪ 발표 2: 부산 경남지역 미등록 이주민 자녀들의 건강권과 보육권, 김사강(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원) ▪ 토론 : 조소영(부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 발표 3: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 사례 이화숙(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 연구교수) ▪ 토론 : 한춘희(부산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목 차

제 1부 이주아동의 교육권

주제발표 1	15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주아동 실태조사와 결과와 권고에 관한 발표	
발표 : 박병수 사무관(국가인권위원회)	
주제발표 2	31
부산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소개	
발제 : 김순량 장학사(부산광역시교육청)	
토론 : 이병준 교수(부산대)	
주제발표 3	39
대안학교의 이주아동 교육사례와 특별프로그램 소개	
발제 : 오명옥 교사(아시아공동체학교)	
토론 : 김재우 팀장(무지개청소년센터)	

제 2부 이주아동의 인권

- | 주제발표 1 | 59
2011 부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발표 : 이수정 주무관(부산광역시청)
- | 주제발표 2 | 67
부산·경남지역 미등록 이주민 자녀들의 건강권과 보육권
발제 : 김사강 연구원(이주와인권연구소)
토론 : 조소영 교수(부산대)
- | 주제발표 3 | 79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 사례 발표
발제 : 이화숙 연구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토론 : 한춘희 교수(부산교육대학교)

이주아동의 인권 증진을 위한 심포지엄

제 1 부

이주아동의 교육권

【 좌장 : 이재식(부산대학교 교수) 】

[1] 이주아동 교육권 실태조사 결과와 권고내용

/ 박병수(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과)

이주아동 교육권 실태조사 결과와 권고 내용

박병수(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과)

1. 들어가는 말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인권의 보편성이 나온다. 그리고 인권은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한 최저선 또는 최후의 보루이다. 그래서 인권은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떠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는 점과 하나의 권리 침해가 다른 권리의 침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은 상호의존적이고 상호 연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을 논할 때 누구의 권리 또는 어떠한 영역의 권리가 더 우선적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특정 상황에서 각 권리영역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항상 현실을 검토해야 한다. 교육권이 지니는 의미도 마찬가지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적절히 교육받을 권리’는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를 향유할 대상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모든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또한 편의상 굳이 구분할 때 교육권이 사회권 영역에 속하지만, 교육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유권과 사회권의 상호의존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즉 자유권을 무시한 사회권, 사회권의 보장 없는 자유권은 모두 불완전하고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사회권 보장이 미약하면 자유권이 침해되고, 자유권이 보장이 취약하면 사회권 신장에 걸림돌이 된다. 교육권을 중심으로 사례로 보면, 빈곤으로 교육받을 권리 보장이 미흡하면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게 되고, 이는 권리보장을 요구하기 어렵게 되는 것으로 연계된다.

본 발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먼저, 인권위가 인권상황의 실태조사 차원에서 시행한 ‘이주아동 교육권 실태조사’의 개요에 대하여 소개할 것이다. 둘째, 인권위가 이주아동 교육권의 개선을 위해 권고한 배경과 내용을 정리할 것이다. 여기서는 실태조사 결과로 파악한 교육권의 의미와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현황 등을 검토할 것이다. 셋째, 이주아동 교육권의 개선 권고내용을 소개할 것이다. 즉, 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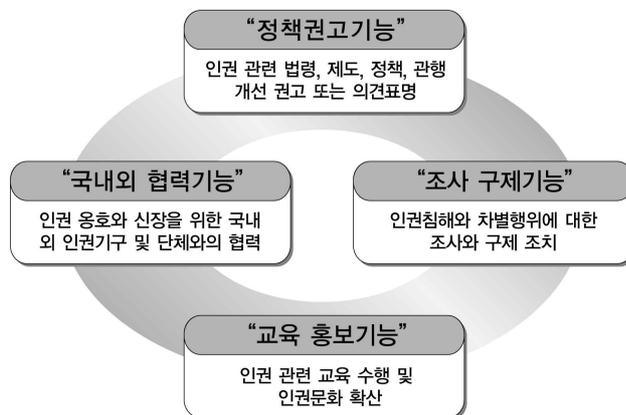
아동의 공교육 접근성 강화, 이주아동의 공교육 이탈방지과 차별과 인권침해 예방, 이주아동의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 등 세 영역으로 나누어 총 8개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주아동의 교육권 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관련부처의 의견과 이주아동 교육권 강화를 위한 과제를 정리할 것이다.

2. 이주아동 교육권 실태조사 개요

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와 정책권고 기능

독립기구, 준사법기구, 준국제기구, 종합적 인권전담기구 등의 특성을 지닌 국가인권위는 정책 기능, 교육·홍보 기능, 조사·구제 기능과 국내외 협력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1>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



이 중 인권위의 정책 기능은 인권위법 제19조에 규정된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제1호),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제4호),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제6호),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제7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가기관과의 협의(제20조), 정부 보고서 작성 시 위원회 의견 청취(제21조),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제22조), 청문회 운영(제23조), 시설의 방문조사(제24조),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제25조) 및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제28조) 등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항에 기초하여 수행된다. 이번 발표내용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미약한 인권 교육·홍보 기능, 조사·구제

기능, 국내외 협력기능은 생략하기로 한다.

나. 이주아동 교육권 실태조사 개요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이주아동 교육권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실태조사는 설문조사, 심층면접조사, 문헌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실태조사 연구팀은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는 이주아동을 중심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주아동의 연구대상 범위를 외국에서 출생한 아동이나 부모의 재혼으로 한국에 입국한 아동(이하 중도입국아동)과 한국에서 출생한 아동 가운데 중도에 외국에서 생활하다 재입국한 아동으로 정하였다. 이들 중 학령기에 있는 아동으로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112명)이거나 학교를 이탈한 아동(38명)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아동(40명) 등 총19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학령기 자녀가 있는 이주노동자 또는 중도입국자녀를 둔 결혼이민자 등 78명의 학부모와 한국 학교를 경험한 후 이탈한 후 현재 몽골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의 부모 18명을 조사하였다. 또한 전에 이주아동을 경험하였거나, 현재 이주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의 담임교사, 다문화 담당교사, 관리직인 부장교사, 교감, 교장을 중심으로 22개 학교의 67명의 교사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관리를 총괄하고, 외국인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담당 공무원과 지역교육청과 시·도 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가정 학생지원 담당 공무원, 이주아동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NGO전문가 등을 면담 조사하였다.

3. 이주아동 교육권 개선 방안 권고 주요 내용

가. 공공시스템에 의한 한국어 교육을 강화할 것

이주아동의 한국어 구사능력은 그들의 공교육 기관에의 입학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공교육에 접하기 이전에 이주아동의 한국어를 교육하기 위한 공공시스템이 취약한 상황에서 한국어 구사능력이 부족한 이주아동의 상당수는 그들의 부모에 의하여 공교육 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의 한국어 교실·유치원·대안교육기관 등에 보내지기도 하고, 공교육에 입학하더라도 학습능력의 부족으로 교과과정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등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이주아동에게 한국어 구사능력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이주아동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전문성, 체계성, 장기성, 안정성 등에서 충분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현재 학교에서의 이주아동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각 급 학교의 역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 밖에서도 이들을 위한 별도의 한국어 교육기관이 부재하고 한국어 교육과정, 교재, 교사의 양성이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한국 공교육에 접하기 이전 이주아동의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공공시스템이 취약하여 대부분의 이주아동은 개인과 민간단체에 의한 한국어 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주아동의 공교육 진입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 거점학교를 확보하고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강사를 배치하는 등으로 이주아동에게 교과과정과 별도의 안정적인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에 적합한 한국어 교육교재, 교수법,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 전·입학절차와 학교생활에 대한 모국어 정보 제공시스템을 강화할 것

이주아동의 전·입학 절차에 대한 정보를 모국어로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주아동의 부모 중에는 모국어 안내와 통역서비스 제공이 부족하여 자녀의 입학절차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업무대행자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어 이해 능력이 부족한 이주아동의 부모는 자녀가 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학교생활에 대한 안내, 학교공부 보충지도, 경제적 지원, 생활상담, 비상시 후견인 역할 등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한국어로 제공되는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다국어로 제작된 학교생활 안내책자 등은 제공하고 있으나 이주아동의 전·입학을 지원하기 위한 모국어 안내와 통역서비스, 그리고 가정통신문 등의 번역서비스는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개별 교육청에서 지역의 이주민 관련 단체들이나 통번역기관들과 협력하여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일부 지원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 이주민에게 제공되고 있는 교육제도와 관련된 모국어서비스의 내용과 전달체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번역과 통역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각 지역 교육청과 민간단체 및 통번역기관과의 상시적 연계에 기반을 둔 통·번역서비스 안정화, 2-3월과 8-9월 등 입학 및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이주아동 입학 및 학교생활 관련 상담인력 배치 지원프로그램 운영, 가정통신문 번역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을 통하여 이주아동의 학부모가 모국어로 된 안내문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다. 학교의 이주아동 전·입학 거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이주아동이 전·입학을 하고자 할 때 일선 학교가 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제반시설이나 프로그램의 미비, 미등록 지위의 학생을 입학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이들의 전·입학을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이주아동의 전·입학에 대한 일선 학교의 소극적 또는 부정적 행위는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제한하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2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의 취지를 반영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이주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에 보장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국내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고자 할 때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신 임대차계약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강화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2010년 12월 이주노동자자녀 등이 기본적인 의무교육 단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학교 취학 절차에 초등학교 입학 등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처럼 정부는 이주아동이 공교육을 받고자 할 때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만으로도 입학에 장애를 받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학교규정, 상부의 요청 등을 이유로 이주아동이 전·입학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비자를 확인하고 있고, 심한 경우 학교사정을 이유로 그들의 전·입학을 거부하는 관행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초등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차별 없는 교육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이주아동이 전학 또는 입학을 하고자 할 때 학교장이 학교의 여건과 기자재 부족 등을 이유로 이들의 전·입학을 거부하거나 본인의 동의 없이 비자 등을 확인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관련 법적 조항 정비 또는 행정지도와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 이주아동의 공교육 이탈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화할 것

이주아동의 상당수는 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다양한 이유로 학교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공교육을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따라가기 어려운 학교교육 수준, 비자 없는 외국인에 대한 단속, 학교문화의 차이, 낮은 학년배정, 한국학생들의 무시, 수업료 부담, 상급학교 진학의 어려움, 불투명한 미래, 경제적 이유로 인한 취업, 학교를 이탈한 모국친구와 어울리고 싶은 마음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는 이주아동의 장기결석 원인과 그로 인한 공교육 이탈의 원인을 대체로 파악하고 있지만 이주아동의 공교육 중도탈락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는 아직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평소 생활지도, 멘토링, 상담 등을 병행하면서 이주아동의 중도탈락을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장기결석을 하는 이주아동이 중도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별도의 조치가 사실상 부재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주아동의 공교육 이탈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는 장기결석 요인에 대한 검토에 기초하여 이주아동이 학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이주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 강화, 학교생활을 위한 비용부담 최소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마.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의 예방 및 구제 조치를 강화할 것

적지 않은 이주아동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내에서 한국학생들로부터 무시와 소외·발음 놀림·피부색 놀림·모국 비하 등의 차별을 당하고, 협박·소지품 강탈·구타 등의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인 예로 이주아동은 ‘너희 나라에는 이런 것 없지’ 등의 모국 비하, 다른 아이들에게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거나 뒤에서 수군거리는 행위로 인한 무시와 소외, ‘너희 나라로 돌아가’, ‘(불법체류 등을) 신고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당하기도 하고, 일부는 ‘돈이나 소지품을 빼앗긴’ 경험과 ‘손이나 주먹으로 맞거나 발로 걷어차인’ 직접적인 폭행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에서 이주아동이 차별받는 직접적인 배경과 이유가 피부색과 언어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교육에서 올바른 다문화 교육을 위한 지향점과 내용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의 다문화 교육은 타국의 문화를 어떤 방식으로 인정하고 수용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내용보다는 얼마나 많은 타국의 문화를 이해하는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의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이주아동을 비롯한 우리사회 소수자를 존중하는 인권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의 지향점과 방향을 정립하고,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 등에 관하여 지도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도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바. 이주아동의 적절한 학년배정을 위한 기준 및 원칙을 마련할 것

한국어가 미숙한 상태에서 학교에 입학한 이주아동들은 학습수행능력을 고려하는 학교 측에 의해서 대부분 자기 나이보다 낮은 학년에 배정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이주아동이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 중의 하나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학년 배정 관행이 이주아동의 학교 부적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낮은 학년으로 배정된 이주아동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이주아동의 상당수도 적절한 기준에 의해서 학년 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한국어가 되지 않는 아동을 어느 학년에 넣어야 할지에 대해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정부는 각 급 학교의 학력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으나,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는 이주아동의 학년배정 시 이주아동의 한국어 실력과 학습능력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이주아동의 나이와 본국학제를 후순위로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아동의 나이와 학년의 차이를 가능한 최소화 한다는 원칙 하에서 이주아동의 나이, 학습능력, 본국학제 등을 고려한 적절한 학년배정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사. 이주아동과 그 부모의 단속 및 강제퇴거 제도를 개선할 것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단속은, 부모와 이주아동 모두 비자가 없는 경우 뿐 아니라 아동은 비자가 있지만 부모의 비자가 없는 경우에도 이주아동의 학교생활을 크게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교육권 보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주아동의 부모들 중에는 외국인 단속이 있는 경우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외출을 금하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등록 이주아동 대부분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부모 등 보호자의 결정에 의해 한국으로 이주해왔거나 이주한 부모들에 의해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으로, 기본적인 생계보장, 학업, 의료 및 보건, 문화 및 여가, 사회관계 형성 등의 권리를 지니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단속 및 강제퇴거 과정에서 부모인 미등록 외국인이 자녀의 보호와 교육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때문에 이주아동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아동의 교육과정이 중단되는 상황도 초래될 수 있다.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단속, 보호, 강제퇴거 관련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은 성인과 아동에 대한 동일한 법 적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별도의 처우규정이거나 단속된 미등록 외국인에게 보호 중인 자녀가 있

을 경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면접을 포함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아동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인도주의에 비추어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별체류허가를 할 수 있으나, 단순히 재학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체류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아동의 부모에 대하여는 입국경위, 불법체류 기간, 체류실태, 타 법령위반 여부 및 그 중대성, 아동 양육·보호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체류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보호·강제퇴거 시 아동 처우에 대한 부분을 「출입국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추가하고, 미등록 외국인이 단속되어 강제퇴거 대상자로 분류되었더라도 그 자녀가 초·중·고 재학 중인 경우 그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해당학기 또는 해당학년 수업을 완료하는 시점까지는 강제퇴거의 집행을 유예하는 방안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아. 공무원통보의무제도를 개선할 것

「출입국관리법」 제84조에 의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강제퇴거대상자이거나 「출입국관리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 알려야 하는 공무원통보의무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법질서 준수 의식 확립, 정부의 불법에 대한 무관용 의지 표명,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문제 방지 등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공무원 통보의무 제도가 존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이주인권 관련 단체들은 그동안 합법적 체류자격을 지니고 있지 않는 외국인이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인권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 공무원통보의무제도로 인해서 공적 시스템 내에서 인권침해구제나 인권보호를 요청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무원통보의무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과 관련해서, 공무원통보의무제도는 합법적 체류자격을 지니지 못한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 자신의 체류자격 미비 사실과 소재지 등이 노출되는 것을 염려하여 자신의 아동의 취학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법무부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통보의무제도 적용 유예를 결정하고 2010. 9. 3. 이러한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한 바 있다. 이는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진전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무원통보의무 조항 자체로 이주아동의 공교육

기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부정적 효과가 적지 않은 만큼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방법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이주아동의 교육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교육공무원뿐만 아니라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구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유보 또는 면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보건소 의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 이주민의 권리구제나 인권침해 구제를 업무로 하는 공무원에게는 외국인에 대한 공무원통보의무의 적용을 유보 혹은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4. 나오는 말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주아동의 교육권에 대한 권리로서의 인식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주아동의 권리에 대한 배타적 인식이 아닌 사회적 구성원에 대한 권리의 인식에 기초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국가의 시혜나 자선 또는 정책적 선택의 문제가 아닌 기본적인 사회정의와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인권위는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그 이행을 권고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거점학교와 이중언어강사 및 한국어반 운영, 2011년 4월부터 시범운영중인 가정통신문 번역사업 확대와 전·입학과정 및 학교생활에 대한 모국어 제공시스템, 학교장이 이주아동의 전·입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관리감독, 거점학교 운영, 이중언어강사 배치·대학생 멘토링·캠프·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속적 지원을 통한 이주아동의 공교육 이탈 예방 노력, 교원연수 및 다문화 이해교육, 한국어반·특별학급·다문화교육 위탁기관 운영 등을 강화·확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법무부는 취학 중인 미등록 아동에 대해서는 중학교 과정을 수료할 때까지 사실상 체류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아동의 부모가 단속된 경우에도 보호를 일시 해제하여 출국준비와 아동의 해당학기 수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과 교육공무원 이외에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보건소 의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에 대한 공무원통보의무 적용의 유보 혹은 면제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향후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모니터링 할 것이다.

<첨부자료1>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주요 권고 내용

권고 항목		권고 내용
이주아동의 공교육 접근성 강화	공공시스템에 의한 한국어 교육 강화	이주아동의 공교육 진입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 거점학교 확보와 이중언어 강사 투입 등으로 이주아동에게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교과과정과 별도로 진행하고, 교육에 적합한 한국어 교육교재, 교수법, 교육 과정을 강화할 것.
	입학절차, 학교생활에 대한 모국어 정보제공 강화	이주민에게 제공되고 있는 교육제도와 관련된 모국어서비스의 내용과 전달체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단체와 통번역기관들과 연계 강화를 통해서 번역과 통역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주학생에 대한 학교의 전입학 거부행위 금지	모든 사람에게 초등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학교장이 학교의 여건과 기자재 부족 등을 이유로 이주아동의 전입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 조항 정비 또는 행정지도·관리감독 강화할 것.
이주아동의 공교육 이탈 방지와 차별과 인권침해 예방	이주아동의 공교육 이탈 방지	이주아동의 공교육 이탈 예방을 위해 장기결석 요인에 대한 검토에 기초해 이주아동이 학업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주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고, 학교생활을 위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차별과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조치 강화	교육현장에서 이주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아동의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이주아동을 비롯한 우리사회 소수자를 존중하는 인권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의 지향점과 방향을 정립하고,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예방과 그 피해아동 지원 등에 관하여 지도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도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
	적정한 학년배정 기준 및 원칙 마련	이주아동의 나이와 학년의 차이를 최대한 최소화 한다는 원칙 하에서 이주아동에 대한 나이, 본국학제, 학습능력 등을 고려한 적절한 학년배정 기준을 마련할 것.
이주아동의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	이주아동과 그 부모의 단속, 강제퇴거 제도 개선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보호·강제퇴거 시 미성년자 처우에 대한 부분을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추가하고, 미등록 이주아동이 초·중·고 재학 중인 경우, 그들의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 그 부모가 단속되어 강제퇴거 대상자로 분류되었더라도 해당학기 또는 해당학년 수업을 완료하는 시점까지는 강제퇴거의 집행을 유예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것.
	공무원 통보 의무제도 개선	교육공무원을 비롯한 이주민의 권리구제나 인권침해 구제를 업무로 하는 공무원(국가인권위원회공무원, 교육공무원, 보건소 의사, 노동부 근로감독관 등)에 대한 공무원통보의무의 적용을 유보 혹은 면제한다는 내용을 출입국관리법령에 규정할 것.

<첨부자료2>

이주아동 교육권 개선 관련 규정

1. 헌법

- 가.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나.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라.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교육기본법

-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 가.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나.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다.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상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라. 제1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아동권리협약

가.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제9조

1.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또는 유기에의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아동의 거소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떠한 절차에서도 모든 이해당사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
4. 그러한 분리가 부모의 일방이나 쌍방 또는 아동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 또는 사망(국가가 억류하고 있는 동안 어떠한 원인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등과 같이 당사국에 의하여 취하여진 어떠한 조치의 결과인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 정보의 제공이 아동의 복지에 해롭지 아니하는 한, 요청이 있는 경우, 부모, 아동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부재중인 가족구성원의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의 제출이 그 자체로 관계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다. 제2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 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 (b)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c)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d)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e)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률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세계인권선언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 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6. 제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2003)

위원회는 “협약 2조에서 나열하고 있는 모든 근거를 포함할 수 있도록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사회적 차별, 특히 한부모가정 아동, 혼외출생아동, 장애아동, 이주노동자의 자녀, 여아에 대한 차별과

싸우기 위해, 특히 대중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포함하여 모든 필요한 혁신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를 포함하여 모든 외국인 아동에게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도록 국내법, 특히 교육과 사회보장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다” 고 하였음.

7. 제13, 1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견해(2007)

위원회는 “고용, 결혼, 주거, 교육 및 인간관계를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주 노동자, 다민족간 출생 자녀 등의 외국인에 대하여 만연한 차별이 지속되는데 대하여 여전히 우려한다”고 하면서 “이 협약의 제 2조와 제 5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이주노동자와 다민족간 출생자녀를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철폐하며, 다른 민족 혹은 국적자가 이 조약의 제 5조에 명시된 권리를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이 협약 제 2조와 제 5조에 따라 법률 제정을 포함한 추가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고 하였음.

8.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4 : 아동권리협약의 맥락에서의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 (2003)

빈곤, 무력충돌, 모든 형태의 부정의, 가정 파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불안정과 여하한 형태의 이주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특히 취약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예방적 정책과 조치들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통해 당사국들은 취약성과 위험성의 요소의 수준을 극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당사국들은 또한 자유로운 사회 내에서 청소년들이 조화롭게 발달할 수 있게 할 비용 효율적 방법들을 사회에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 김순량(부산시교육청)

▶ 토론자 : 이병준(부산대학교 교육학과)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김순량(부산광역시교육청 장학사)

1. 서론

결혼이주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 사회 구성원의 언어·문화적 배경이 다양화되고,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¹⁾이다.

2008년 10월 교육과학기술부는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의 다문화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학생²⁾ 교육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인 경우 한국어가 미숙한 어머니의 양육 등으로 언어발달 지체, 문화 부적응 등 어려운 점에 주목하여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다양한 교육 지원을 통해 언어·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주류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를 통해 일반 학생 및 사회의 다문화 관련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연도별 다문화가정학생수 증가 현황>

(부산광역시교육청, 4.1. 기준, 단위 : 명)

구분	유	초	중	고	계	증가 인원	증감률(%) <전년도대비>
2007년	174	434	80	28	716	.	.
2008년	131	651	94	46	922	206	28.7%
2009년	202	845	141	46	1,234	312	33.8%
2010년	261	1,022	208	107	1,598	364	29.4%
2011년	464	1,184	319	118	2,085	487	30.4%

1) 다문화가정 학생 재학 현황(명) : '07년 14,654명 → '08년 20,180명 → '09년 26,015명 → '10년 31,788명 → '11년 38,890명

2) 다문화가정 학생 : 국제결혼가정 학생, 외국인근로자가정 학생

II.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현황

1. 필요성

- 가. 한국어 및 기초학습 능력 부족으로 인한 학습부진
- 나. 문화 격차로 인한 부적응 및 정체성 혼란
- 다. 친구 관계 형성 미숙으로 인한 정서적 소외감

2. 추진방향

- 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나. 문화격차 해소 및 관계 형성 능력 증진을 위한 문화체험 및 어울림 활동
- 다. 교사 및 학생·학부모 대상의 다문화이해교육 강화

3. 교육지원 현황

가.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 1) 방과 후 한국어 교실 운영(유·초·중학생)
- 2) 담임교사 및 1:1 드림교실 운영(초·중·고등학생)
- 3) 1:1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초·중·고등학생)
- 4) 동반·중도입국자녀 맞춤형프로그램 운영 지원
 - 아시아공동체학교
- 5) 다문화가정 학생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 아시아공동체학교
- 6) 학교별 방과 후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나. 정서적 소외감 해소 및 정체성 확립 지원

- 1) 토요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월1회, 연10회
- 2) 문화캠프 및 어울림마당 운영 : 연3회
 - 방학 중 캠프 및 어울림 마당
- 3) 연구학교, 거점학교 및 이해교실학교 중심 문화체험활동 강화
- 4) 학교 순회 다문화이해 교육(강사 : 이주여성)

다.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 1)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다문화이해교육
 - 부산광역시 초등학교 교육과정 평성·운영 지침에 명시
- 2) 학교순회다문화이해교육
- 3) 연구학교, 거점학교, 이해학교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교육

라. 교원의 다문화교육 전문성 신장

- 1) 초·중등교사 다문화이해교육 60시간 직무연수(200명)
- 2) 다문화 이해를 위한 찾아가는 연수 : 초·중100교
- 3) 자격연수 교육과정에 다문화이해교육 2시간 이상 편성
- 4)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 및 일반화
- 5) 다문화교육자료 개발 보급

마. 다문화가정 학부모 역량 강화

- 1) 멘토링 참여 학생 학부모 연수 : 부산대, 부산교육대학교
- 2) 대학연계 다문화가정 학부모 연수(40시간) : 부산교육대학교
- 3) 다문화가정 학부모 역량강화 사업(공모 지정 운영)
- 4) 연구학교, 거점학교, 이해학교, 학부모상담프로그램 운영 학교
- 5) 학교생활 안내 책자(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바. 2012년부터 다문화특별학급 설치·운영

- 1) 초등학교 2개 학급
 - 동반·중도입국 자녀 생활적응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지원

사. 동반·중도입국 자녀 입학관련 상담

- 시교육청 창의인성복지과, 교수학습기획과

아. 다문화교육 기반 및 지원체제 강화

-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지원
- 다문화교육 네트워크 강화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에 대한 토론편

이병준(부산대학교 교수)³⁾

I. 현황

1. 다문화가정 학생 수의 증가
2.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가정학생 교육지원방안」(2008, 10)
 - 가. 학교생활적응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 나. 정서적 소외감 해소 및 정체성 확립 지원
 - 다.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 라. 교원의 다문화교육 전문성 신장
 - 마. 다문화가정 학부모역량 강화
 - 바. 다문화특별학급 설치운영 (2012년부터)
 - 사. 동반, 중도입국 자녀 입학관련 상담
 - 아. 다문화교육 기반 및 지원체제 강화

II. 향후과제

1. 기본인식
 - 가. 다문화가정학생들의 역량이 우리 사회의 미래역량임을 인식
 - 나. 앞으로 생겨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이 사회적 비용을 엄청나게 요구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
2.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
 - 가. 정체성은 습득해야하는 문화의 문제가 아닌 관계성의 문제
 - 나. 다문화가정학생들이 경험하는 일상생활의 문제가 더 중요
 - 다. 상호 문화적 관점에서 공존과 관용의 문제로 풀어가야 함

3) green957@naver.com

- (3) 전체학생들을 위한 문화다양성/지속가능발전교육(ESD) 강화
 가. 인권, 문화다양성, 관용 등 통합적 접근의 필요
 나. 사고, 인지의 측면에서 개방성과 유연성을 기르는 것에 초점
 다. 다양한 토론식 학습, 문화예술교육방법적 활용 필요
- (4) 교사/교육행정공무원들의 다문화역량(상호문화역량) 강화
 가. 지식중심 연수에서 역량중심 연수프로그램으로 전환
 나. 다문화이해에서 문화다양성 & 지속가능발전 (공존) 으로
 다. 학교만이 아닌 지역사회와 연계·협력하는 문제해결적 접근필요
 라. 교사만이 아닌 교육행정공무원의 행정지원역량 연수 필요
- (5) 다문화가정학생들을 위한 특별 역량 프로그램 개발
 가. 아시아-글로벌 국제적 교류를 위한 훌륭한 자산으로 인식 필요
 나. 이중언어교육을 통한 미래지향적 역량 강화
 다. 조절·중재의 리더십(오바마형 리더십) 교육

※ 참고문헌

- 윤갑정·이병준 (2007). 다문화정책과 다문화교육 - 호주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제2권 제2호, pp. 13-32
- 이병준 외 (2010). 문화역량과 문화예술교육. 교육과학사
- 이병준·박지연·박응희 (2010). 다문화교육 담당교사의 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문화연구. 제16-1호, pp. 225-254
- 이병준·박응희·한현우 (2010). 공무원 다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연구. 문화예술교육. 제5권 1호, pp.39-65
- 한국문화교육학회 (2010). 다문화역량. 2010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3] 특별한 아시아공동체학교

/ 오명옥(아시아공동체학교)

▶ 토론자 : 김재우(레인보우스쿨 다문화역량강화팀)

특별한 아시아공동체학교

오명옥(아시아공동체학교 교사)

한국의 다문화 시대는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주민은 200만 명을 넘었고 그 이주민의 자녀들의 수는 6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국제결혼의 비중이 초혼보다는 재혼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이주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다문화 가정의 수는 2020년까지 16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변화 과정에 대한 준비와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교육적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변해가는 시대에 따른, 이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며 체류아동과 비체류 아동에 대한 교육권에 대한 보장과 교육적 혜택에 대한 많은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시아공동체학교에서는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연구하고 방법을 찾고 있는 학교이며, 다문화·다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입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과목은 기초 학문(주지교과), 외국어 교과, 감성교과, 예체능교과, 생태교과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령에 맞는 적절한 과정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초학문은 국어, 수학, 사회(세계사 포함), 과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교과에서는 다문화적 요소를 가미한 폭넓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어(한국어)는 어휘, 문장, 내용파악, 이해, 적용의 수업방식을 적용하며, 세계사 수업은 글로벌 인재 양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기초적 학문이 되고 있습니다. 수학은 기본 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응용, 적용까지 가르치고 있고, 과학은 토의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 현상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모든 과정을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도출해 내는 과정을 익히고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과학적 원리를 실험을 통해 이해하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어 교과는 글로벌 인재양성의 토대가 되고, 모어교육인 동시에 이중 언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다양한 학생들을 위한 수업입니다. 수업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성교과는 아이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정화하며, 타고난 기질에 대해 인지하고 자아발견을 통한 자존감 향상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명상 수업을 통해 자아를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심신의 안정과 평안을 통해 평화로운 마음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상담 수업을 통해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내재된 불안감을 해소하여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체능교과는 1인 1악기, 1인 1운동을 통해 음악적 감수성과 기초체력훈련을 통한 신체의 리듬을 발견하는 수업입니다. 학생들은 최소한 하나의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첼로, 바이올린, 플루트, 오카리나, 피아노 등 각자에 맞는 악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1인 1운동을 통해 아이들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예체능 활동을 통해 다양한 학생들이 감성적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태교과는 1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보여행과 생태여행, 텃밭가꾸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011년의 도보여행은 '부산 둘레길 걷기'입니다. 테마별 지정된 부산둘레길을 타원형으로 걸으며,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조망해 보고, 느낌의 미학을 몸으로 채득하게 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준비하는 생태여행은 자연과 교감하고 생태계를 통한 생명의 다양성을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 지구라는 모태 안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삶의 자세를 알게 하는 수업입니다. 작은 텃밭을 일구어 음식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이로움에 대해 알고, 느끼고 깨닫는 노작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반에서는 이주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외국어로서의 외국어(영어, 일어, 러시아어, 중국어), 모국어로서의 외국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는 프로그램과 세상 밖 활동을 통해 한국 문화 및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자립심을 길러주는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교육과정에 맞는 국민공통교과 예체능 교육, 문화 예술교육,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 상호간의 관계와 공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한국생활의 적응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 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동아리 활동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동아리는 일어, 러시아어, 검도, 볼링, 기타동아리 이며, 일본어, 러시아어 동아리에서는 언어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활동이 진행되고 있고, 2009년에는 일어 동아리에서 직접 일본을 방문하여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1. 학교 소개

아시아공동체는 2006년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서 여름학교를 시작으로 사회에 첫 관심을 내디디었습니다. 당시의 아시아공동체는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국제결혼으로 한국 사회에 거주하게 된 이주 여성들이 문화가 다르고 민족적 성향이 다르며, 교육열이 높은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관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사회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돌봄, 배려를 받아야 할 이주아동·청소년들이 인종적·민족적 차별과 편견, 학력 위주의 우리 사회에 당당히 맞서 세계적 인재가 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가치 있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설립할 당시, 아시아공동체 학교의 설립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았고, 도움의 손길 또한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뜻이 있는 몇몇 분들이 모여서 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위탁형 대안학교(초,중,고)로 인가를 받았으며, 현재 학생들의 원격 관련 사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교육 이념

2-1. 다문화교육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의식과 태도를 기르고 관용과 공감에 대한 다문화 사회의 바른 정착을 위해 다문화 교육을 통한 민주적·창조적 세계인의 바탕이 되게 한다. 아울러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학생 상호간의 이해와 평등관계에 대해 숙지시키고, 인종·성별·학습능력·언어적 배경·종교적 차이 등 서로 다른 문화를 동등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하고 학생들에게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수용하는 자세를 키우고 이해시키려는 태도와 가치 교육을 시행한다.

2-2. 평화교육

다양한 문화권에 속해 있는 학생들에게 평화와 화해의 기술을 배우게 하며, 반편견 교육과 비폭력 교육을 통해 학생 상호간의 이해와 갈등 충돌을 최소화한다.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배우며 화해의 기술을 통해 폭력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믿음과 이해교육을 겸한 평화교육이 되도록 한다. 교실을 작은 사회로 규정하고 교실 내에서 평화를 형성하는 노력들을 통해 큰 사회로 나아갔을 때 평화를 만드는 길을 배우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2-3. 인권교육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학교 내에서 배우게 한다. 최고의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지 않고 환경권, 인권교육 실천을 향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교사·학부모의 인간존중의식을 함양시킴과 동시에 나의 권리와 남의 권리에 대해 알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게 한다. 인간존중의식 함양에 목적을 두고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며, 자기존중을 통해 타인을 존중하며 차별이 없는 공평한 권리를 적용하여 아동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익히고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자세를 함양한다.

2-4. 생태교육

우리 삶의 모태인 지구환경과 그 위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명과의 관계를 조망하고 인간과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생태적 감수성을 회복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생태체험교육을 통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건강한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실천교육을 지향한다.

생명이 죽어가고 우리의 터전이 파괴되고 무분별한 개발과 자원낭비로 인해 숲, 물, 땅, 공기의 오염에 대해 깨닫고 생명의 질서를 찾는 행복한 자연환경을 배울 수 있는 감성을 갖게 한다.

3. 설립 목적

세계화·정보화의 물결을 타고 현재 우리 사회는 120만 명에 이르는 이주 외국인 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주노동자 또는 다문화가정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 맡은바 역할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지만 교육과 돌봄의 대상이어야 할 많은 아이들은 인종적·민족적 편견과 차별, 학력 위주의 풍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외관상 대다수의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교육기관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으며 잘 적응하고 있지만 일부 아이들은 생김새, 피부색의 차이와 미숙한 언어구사력 때문에 학교생활과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주아동·청소년의 경우는 우리 사회로의 갑작스러운 이주로 인하여 교육의 근본이 되는 언어 능력의 부재와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하여 정당하게 교육 받을 권리로부터 배재되어 있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관심의 문제이든 재정의 문제이든 공교육기관이 이들 외국인노동자·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때까지 공교육의 바깥에서 아이들이 마음 편히 공부하고 놀 수 있는 열린 작은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아시아공동체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3. 일반 현황

○ 연혁

일 자	연 혁
2005. 03. 10.	아시아공동체학교 추진위원회 구성
2006. 07. 25	여름학교
2006. 09. 04	15명의 학생으로 수업 시작
2007. 09. 03	디딤돌과정 시작
2008. 04. 18	다문화청소년상담지원센터 개소
2008. 05. 09	아시아공동체국제어린이도서관 개관
2009. 02. 22	대연동으로 이전
2010. 03. 04.	문현동으로 이전(구. 배정초등학교)
2011. 03. 01.	위탁형 대안학교(초·중·고)로 인가를 받음

○ 학생현황 (2011년 8월 말 현재)

- ▶ 총 : 54명 (다문화가정자녀 : 38명, 비다문화가정 자녀: 16명)
- ▶ 학생 구성 비율 : 비다문화 비율을 7:3의 비율로 구성
- ▶ 학급구성 : 전 학년 한 학급당 인원은 10명으로 구성

○ 교사 및 교육시설 현황

- ▶ 교사 현황 : 총 37명(상근 교사 7명, 비상근교사 : 30명)
- ▶ 직원 현황 : 박효석 교장(대외 업무, 행정업무 총괄)

○ 교과과정 운영 현황

- ▶ 수업과정의 운영체재 : 수업과정은 이주아동·청소년을 위한 디딤돌반과 정규반으로 나누어서 운영

정 규 반	디 딤 돌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 전 : 교과활동 중심 · 오 후 : 재량활동, 특별활동 · 주 말 : 생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 전 : 한국어, 한국사회 문화 적응 교과 · 오 후 : 재량활동, 특별활동 · 주 말 : 생태활동

○ 교과과정의 구성 및 내용

- ▶ 주지교과 : 국어, 수학, 사회(세계사 포함), 과학
- ▶ 외국어교과 :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중국어
- ▶ 예체능교과 : 음악(첼로, 오카리나, 플루트, 성악, 바이올린), 체육(체육활동, 수영, 태권도, 야구), 미술(미술, 종이접기), 사물놀이, 한국무용
- ▶ 생태교육 : 부산둘레길 걷기여행, 생태여행, 자연학습활동
- ▶ 동아리활동 : 일어동아리, 러시아어동아리, 볼링동아리, 검도동아리, 기타동아리

4. 이주아동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

이주아동 청소년은 2006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고, 초등학생의 경우 5,000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다양한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현재 다문화 아동 청소년은 8만 8천명으로 2007년에 비해 22.8% 증가한 상태이며 이중 5만 8007명이 결혼 이민자 자녀인 이주아동 청소년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이주아동 청소년들에 비해 상급학교 중도 탈락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를 위한 교육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과 관심은 많아지는 반면 이주아동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적 관심과 정책이 사회적으로 미비한 상태지만 아시아공동체학교는 이들만을 위한 교육적 대안에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주아동청소년들의 입국과정에서는,

○ 입국

▶ 아동 청소년의 교육 가이드라인 안내

· 연령에 맞는 한국어 교육과정 (초, 중, 고)

- 이주아동 청소년들은 아동기부터 시작하여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들 나이에 알맞은 수용능력에 따른 개별차이를 인정한 다양한 한국어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저/초고/중+한국어 회화, 학습어휘, 한국어 기초 문법/고+한국어 회화, 학습어휘, 한국어 기초문법)

· 공교육 안내(거점학교, 인근 지역 학교, 대안학교)

- 초등학교 저학년일 경우 인접 지역 학교를 선호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한국의 공교육에 대한 두려움, 한국의 교육(입시 위주의 교육)에 대한 자신감 결여 등이 나타납니다.

- 인접 지역 초, 중등학교에 대한 입학 안내와 고등학교 입학안내에 대한 다양한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교육내용 안내(국민공통교과 안내 및 한국의 교육 현실 적응에 따른 자료 제공)

- 입국 아동 청소년들은 한국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적응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국과 동시에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입학 / 위탁

▶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정서적 안정 유도

· 한국에서의 문화적 충격을 최소화 하고 한국 생활 및 학교생활의 적응 유도

· 또래집단 간 다양한 문화권에 대한 이해와 소통, 대인관계 기술을 위한 다양한

상담이 진행

· 최소 4회기 ~ 8회기 개인상담

- 최소 4회기 ~ 6회기 집단상담
- 학부모 상담 및 가족상담 4회기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1년 동안 꾸준한 상담을 통해 개인과 사회에 대한 수용(이해)적 태도 갖춤
- ▶ 한국어 활용능력에 따라 한국어 기초과정 초급, 중급, 고급 운영
 -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한국어 활용 능력을 점검하고 한국어 교육과정 진행
 - 학생의 개인별 수준별, 학령별에 따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진행
 - 한국어 활용 능력에 따라 정규 교육과정 연계한 수업 단계적 진행
 - 한국어가 어느 정도 습득되었다고 교사가 판단하면 단계적으로 다양한 교과목을 접목하여 학습 어휘 습득할 수 있도록 유도
 - 한국어의 습득정도에 따라 정규 교육과정 편입
- ▶ 외국어 교육 및 모국어 교육 진행
 - 이주아동청소년들의 강점인 이중 언어 노출을 통한 개인 역량 강화
 - 외국어 교육(영어, 일어, 러시아어, 중국어) 진행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 진행
 -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아이들이 서로의 언어를 공유하는 활동을 진행
 - 모국어 교육 진행
 -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문법적 기능, 문학 지도 등을 통한 수업으로 개인의 자존감을 향상하고 한국문화의 이해를 돕거나 이주아동청소년들 상호간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 한국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 활동
 - 한국교육과정 중 국민공통교과와 연계한 활동 수업 진행
 - 주지교과(국어(한국어), 수학, 사회, 과학) 학습 진행
 - 정규반(초1 ~ 고1)과 순차적 수업 참여
 - 예를 들어 실제 중학교 1학년의 중국학생인 경우 중학교 1학년의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힘든 상황
 - 초등학교 5학년 학습과정과 연계
 - 개인별 지도(예 : 초5 수학, 초6 수학, 중1수학 개념 익히기)
 - 정규반 편승
- ▶ 문화 적응활동
 - 한국문화 적응활동 전개 (생태, 노작, 여행, 세상 밖으로 활동)
 - ‘자연과 인간’을 주제로 한국인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는 다양한 수업 전개
 - 생태여행을 통한 한국의 자연과 문화를 공감하는 활동 진행
 - 여행을 통해 한국인을 직접 만나고 인터뷰 하며 한국의 전통과 역사, 문화를 배우는 활동 전개
 - ‘세상 밖으로’ 활동을 통해 스스로 찾아가는 실제적 교육 진행
(예를 들어 실제로 자갈치 시장을 찾아가서 생선 이름 10가지 찾아 적기, 가족을 위한 선물 사기, 대중 교통수단을 학생 스스로 이용하여야 함

→ 교사는 그림자

- 한국어가 서툰 아이들이 한국 속으로 직접 들어와서 스스로 체험하고 활동하는 교육을 진행하여 한국문화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함)

· 세계 문화 적응활동 전개

- 세계 놀이, 음악, 영화, 음식 함께 공유하는 활동
-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얻음
- 자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타문화에 대한 존중감을 같이 배움

▶ 예체능 활동

- 1인 1악기 연주 (피아노, 오카리나, 첼로, 바이올린, 플루트 등)
- 1인 1운동(수영, 야구, 체육)

- 언어 외에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감성을 공유하고 자신의 내면을 정화하는 활동 진행

- 체육활동을 통해 청소년기의 신체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한국학생들과의 교류를 체육활동을 통해 좀 더 가깝게 다가감(친밀감 높임)

▶ 학생 자치활동 및 동아리 활동

- 학생 자치 활동 참여
- 공동체 회의(통역으로 회의 참여)
- 학교 청소 및 학교 주변 정화 활동
- 카페 운영
- 다문화 프로그램 기획

(예: 러시아 음식, 영화, 놀이, 음식 - 스스로 찾고 정보를 주며 도움을 줌)

· 동아리 활동 전개(볼링, 검도, 러시아어 동아리, 일본어 동아리, 기타 동아리) → 서로 통역해 줌, 한국 등 다양한 국적의 청소년들이 함께 어우러짐.

▶ 사회연계활동

- 지역사회단체와 연계한 활동 진행
- 지역사회의 역할 이해
- 한국문화 및 사회에 대한 이해
- 개인의 직업 및 진로에 도움이 됨
- 사회 공헌도 높임
- 한국사회 적응도 높임

○ 진로 지도

- 아시아공동체학교 학생 : 초, 중,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지도
- 직업교육 후 취업
- 대학교 진학(이중 언어, 외국어 능력의 강점을 살린 다양한 대학진학 지도)

- 위탁학생들의 원적교육기관으로 편승 (2011년 현재 100여명 일반학교 전학)
- 학생이 원할 경우 일반 학교로 돌아감
- 인접지 학교 및 특성화 학교로 진학 (예: 이·미용 전문학교, 체육 특기생 등)

5. 학교 운영 성과 및 전망

학교가 개교한지 6년이 되는 신설학교에서 교육적 성과를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시아공동체학교는 외국인 노동자·이주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국 최초의 실험적 대안학교로서 짧은 기간에 비해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을 미치며 누구도 걸어가 보지 않은 전인미답의 길을 힘겹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볼 때는 그간 외국인노동자·다문화가족의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해 왔던 분들이 주로 주류학교에 아이들이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데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에 비해 이들 가족이 다른 교육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이들의 장점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방향에 대해 고민할 필요성이 있음을 우리 사회에 하나의 화두로 던졌다는 것이 교육 외적인 성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외국인 노동자 및 이주 아동·청소년들의 숫자는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이들 자녀들의 교육문제에 대한 전사회적인 고민과 교육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05년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들의 중도 탈락률이 일반 가정에 비해 222배, 다문화 가정에 비해 166배 많은 실정입니다.

사회적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가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재혼한 국제결혼 여성들이 본국에서 낳은 자녀들을 한국으로 입국시키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고, 그 과정동안 부모의 양육이 지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가 친지, 또는 한 부모 가정(부)에 의한 양육, 제대로 된 정규교육과정과 학력 부진으로 인한 자존감 하락 및 부적응,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들을 지니고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교육적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주아동·청소년들의 취학률을 높이고 한국사회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각 기관과의 협조, 교육과정 안내, 교육 지원체계, 다양한 입국 프로그램, 한국어 교육과정, 위탁형 교육기관 등을 통한 지원으로 그들에게는 한국에서의 안정과 적응을 돕고, 한국 사회는 이들의 역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능력을 계발하여 사회적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시아공동체학교가 추구하는 최종 목표>

- 1) 인간, 사회, 자연을 상호보완적인 하나의 유기체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인간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
- 2) 인종적, 민족적 편견과 차별에서 해방되어 천부인권을 누릴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 3)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을 창조적으로 승화시켜 민주적이고 창조적인 세계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
- 4) 자신과 사회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균형 잡힌 인간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
- 5) 다문화, 평화, 인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내면적 평화로운 인간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
- 6)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뿌리에 대한 건강한 자신감을 가지면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지닌 인간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

아시아공동체학교는 나라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과 사람이 다를 뿐이며, 개개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를 뿐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아공동체학교는 다문화 가정(이주아동청소년 포함)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연구하고 방법을 찾고 있는 학교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인간, 자연, 사회를 넓은 시선으로 바라 볼 수 있는 균형 잡힌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기를 영원합니다. 아시아공동체학교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게 하고 세상의 다양한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키워가는 다문화, 다언어 학교입니다. 아시아공동체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은 자신과 사회에 책임질 줄 알며 인권을 존중하고 서로의 문화를 수용하는 자세를 키워가는 글로벌 인재가 될 것입니다.

6. 사례

<사례 1> 리나(가명) 대학1 - 러시아

러시아 어머니를 따라 한국에 온 리나는 어머니의 재혼으로 한국생활을 하게 된 이주 청소년이었습니다. 아시아공동체학교에서 디딤돌반 과정을 거쳐 현재는 부경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리나는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머니조차 어디에서 한국어를 배워야 할지 막막하였습니다. 지금은 한국어를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만 리나가 한국으로 들어올 당시만 해도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관에 매우 적었습니다.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울 경우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주아동청소년의 환경에서 본다면 월 40만 원 이상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입국하여 온 러시아 사람들에게 아시아공동체학교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입학 후 한글 교육은 물론 한국 정규 교육과정을 같이 익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당시에는 아시아공동체학교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없어서 2년 만에 고등학교를 마칠 수는 예원여고의 어머니 한글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쳐야 했습니다. 이후 부경대학교에 입학하여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사례 2> 동규(가명). 고1 - 중국

어머니의 재혼으로 중국에서 2년 전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동규는 대구에서 살다가 부산으로 왔습니다. 오게 된 이유는 어머니가 한국어 사용 능력 뛰어나 한국어 소통 능력은 매우 뛰어났지만 한국의 중학교 3학년에서 학습을 하는 도중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이들 대부분 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1학기에 두 번 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학력평가, 수행 평가, 듣기 시험 등 한국의 교육을 따라가기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울러 중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학교에 가기도 힘들고 집안에서 은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의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노력으로 아시아공동체학교로 전학을 하게 되고 위탁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또래 집단 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중국 친구들과 하고만 친하게 지내며, 분노조절이 안되어 폭력적인 행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상담(개인상담, 부모상담)을 하고 있는 도중이지만 한국학교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현재 부적응 상태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례3> 윤수(가명) 중3 - 페루

윤수는 2010년 어머니의 재혼으로 페루에서 한국으로 오게 된 학생입니다. 남미에서 온 윤수는 문화적 차이, 언어적 차이, 환경적 차이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스페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어 소통능력이 전혀 안되고, 영어도 안 되는 학생이었습니다. 말문을 열다가도 입을 닫아 버리고, 스페인어를 하는 친구도 없었으며, 누군가와 이야기할 상대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밤에 일을 하러 가시고 낮에만 집에 계십니다. 윤수가 집에 돌아가는 시간에는 항상 혼자 있어야 했습니다. 윤수는 한국의 공교육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까지 해야 하는 야간 자율(?)학습과 서열화된 시험에 대한 적응, 친구를 사귀는데 대한 두려움 등 윤수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아시아공동체학교에 왔습니다.

윤수는 디딤돌 반에서 수업을 하며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문화체험활동, 다문화 활동 등을 통하여 자국(페루)에 대한 자긍심과 호기심을 한국친구들에게 가르쳐 주고 체육활동을 매우 좋아하여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냅니다.

지금은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으며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적응도가 높아졌습니다. 학습에 대한 흥미도 높아져서 학습에 대한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발전적인 모습은 체육활동 중 야구에 흥미와 재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구 감독님도 윤수의 재능을 인정해 주시고 재능을 키워주고 계십니다. 문화 활동과 체육활동을 통한 정서적 안정을 유도한 사례입니다.

<사례4> 리유. 중국 - 초6

중국의 어머니가 재혼하여 데리고 온 학생입니다. 한국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집 밖을 나가지 않았던 리유는 아시아공동체학교의 세상 밖으로 활동, 다문화 활동, 개인별 수준별 교육활동 진행으로 지금은 외국어 영재뿐만 아니라 수학을 굉장히 잘해서 수학선생님이 되는 것을 꿈꾸고 있는 학생입니다.

<사례5> 자바리나. 러시아 - 중2

러시아에서 온 이주청소년입니다. 아시아공동체학교에서 수업을 받았지만 자바리나가 중학교에 갈 무렵, 아시아공동체학교는 중학교 과정이 없어서 일반 공교육에 학교를 다닌 학생입니다.

하지만 공교육에 다니는 중 학생들의 괴롭힘, 왕따, 폭력 등으로 많이 힘들어 했고, 개인별 맞춤학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을 따라가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따로 보충학습반에 들어갔지만 그 곳에서 학습하는 것 또한 또래 청소년들의 이해 부족으로 많은 아이들로부터 괴롭힘을 받아 왔습니다. 이후 아시아공동체학교에서 위탁 교육이 진행되었고 지금은 아시아공동체학교에서 생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한 다양한 상담과 개인별, 수준별 맞춤학습을 통해 학교생활을 매우 잘하고 있으며 진취적 성향을 가지고 자신을 계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 스스로 노력하는 부분도 많지만 교사, 상담, 지역사회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시아공동체학교 학생회장으로서 타문화권 학생들과 원만히 지내며 한국 문화를 알려주는 문화 메신저 역할을 잘해내고 있습니다.

<사례6> 까를로. 페루. 중1

까를로는 아시아공동체학교가 개교할 당시부터 입학관련 상담을 계속 받았던 학생입니다. 아시아공동체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 공교육을 선택했던 학생입니다.

재혼으로 한국에 온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한국의 공교육에 적응하기를 원했고, 한국에서 성장하여 취업을 하고 돈을 벌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를 원했습니다. 아시아공동체학교가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임을 알고 있고, 교육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아시아공동체학교에 다니는 것 자체가 한국사회에서는 또 다른 차별과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일반 공교육에서 교육을 받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반 공교육에서는 다문화 및 이주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이해교육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 및 학생들에게 받았던 무관심, 차별, 폭력 등으로 결국 학교를 무단결석하게 되고 또한 가출하여 문제(폭력, 절도) 일으키다가 결국 많은 상처를 안고 페루로 돌아갔습니다.

<사례7> 최영. 러시아. 고1

러시아 어머니의 재혼으로 한국으로 온 이 친구는 여러 부적응을 모두 겪은 친구입니다. 일반 공교육에 학교를 다녀 보았고, 러시아 학교도 다녀 보았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적응하지 못하는 이 친구는 상담 결과 인성과 교양, 타인 또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부족 및 존중감 결여로 여러 문제가 나타난 것입니다.

문화나 사회에 대한 이해교육보다는 지식습득에 중점을 두고, 학습 보다는 학력에 중점을 둔 여러 교육 기관에서 본인이 존중받지 못하고, 자신과 친구간의 관계 형성 및 공동체 생활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은 아시아공동체학교에서 스스로의 문제를 깊이 자각하고 있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 문화 충돌, 타문화 존중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입학 당시부터 지금까지 6개월 정도 지났지만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면 긍정적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한 아시아공동체학교에 대한 토론문

김재우(무지개청소년센터 팀장)

아시아공동체학교는 저와 인연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일을 시작할 무렵, 아시아공동체학교도 태동을 시작했으니, 우리는 같은 시기에 출발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다문화’라는 말조차 낯선 2006년 아시아공동체학교 설립과 관련한 기사를 인터넷으로 접하고는 무작정 전화를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박효석 대표님과 처음 만나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때 나누었던 이야기가 현실로 실현되기도 했습니다. 2011년 무지개청소년센터가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해 전국11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Rainbow School’이 바로 그때 만들어진 아이디어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해서 많은 것을 꿈꾸고, 생각하며 모의하던 시절이 그림습니다.

이번 토론문을 작성하면서 그 동안 아시아공동체가 걸어온 쉽지 않았던 길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많은 시련과 위기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지금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보금자리로 자리 잡은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6년 보다 더 중요한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특별한 아시아공동체학교로 거듭나기 위한 방법들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1. 분리와 통합 그리고 소유하지 않는 사랑

처음 아시아공동체학교를 만났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통합’ 형태의 학교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거의 모든 교육기관이 ‘분리’의 노선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통합의 형태가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분리는 심리적인 안정과 적응의 원활함의 측면에서는 통합보다는 유리하겠지만, 모든 면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흥역을 예로 들면, 흥역은 한 번 앓고 나면 다시는 걸리지 않죠. 하지만 걸리지 않으면 흥역에 대한 면역력은 영원히 생기지 않습니다. 한번은 꼭 앓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이주배경청소년들도 비슷합니다. ‘다문화’에 대한 우리사회의 차별과 편견이 사라지지 않는 한 흥역처럼 언젠가는 걸림돌을 마주하게 되겠지요. ‘분리’는 그 장애물과 마주하는 시점을 늦추는 역할을 할 뿐, 장애물을 극복하는 궁극적인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통합의 장점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아시아공동체학교의 통합교육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더 나아가 통합을 넘어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아시아공동체학교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한국사회 적응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며 더 큰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힘을 키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한국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한 첫발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 뿌리는 내리고 안착할 것인지는 이주배경청소년이 본인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그 동안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살피주는 아낌없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고 할 때는 아쉬움이나 미련 없이 떠나 보내는 ‘소유하지 않는 사랑’도 필요합니다.

2. 무한한 실험과 검증을 통한 계량화와 체계화

‘통합’을 제외하고 아시아공동체학교의 장점을 꼽으라면, 지치지 않는 ‘실험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제문에서 볼 수 있듯이 아시아공동체학교는 다양한 교육이념을 기반으로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아공동체학교가 교육현장인 동시에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의 장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이 제대로 인정받고 더 많은 곳에서 활용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실험에 대한 효과검증과 검증을 통한 계량화, 체계적인 매뉴얼 개발을 통한 표준화와 체계화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미래를 위한 준비 : 진로의 탐색과 교육

2011년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80%이상이 미취학연령이며, 학령기의 자녀도 50%이상이 초등학교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더 많은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학생이 될 것이며, 상급학교로 진학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조사된 자료⁴⁾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취학률이 53.5%이며, 상급학교로 갈수록 더 저조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더 많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탈학교하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는 아예 학교 진입이 힘든 경우도 있어, 향후 탈학교 또는 학교 미진입 이주배경청소년이 증가할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공동체학교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주배경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도록, 미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한, 성인전기에 이른 이주배경청소년과 학업을 포기한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진로탐색과 진로교육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4) 2011년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 조사자료

이주아동의 인권 증진을 위한 심포지엄

제 2 부

이주아동의 인권

【 좌장 : 조소영(부산대학교 교수) 】

[1] 2011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 이수정(부산광역시청 여성정책담당실)



Dynamic BUSAN

목 차

- I 비전 및 목표
- II 결혼이민자 기본현황
- III 2011 중점 추진 과제별 사업

비전과 목표

열린 다문화 사회로 성숙한 세계도시 구현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강화로 지역 글로벌 인재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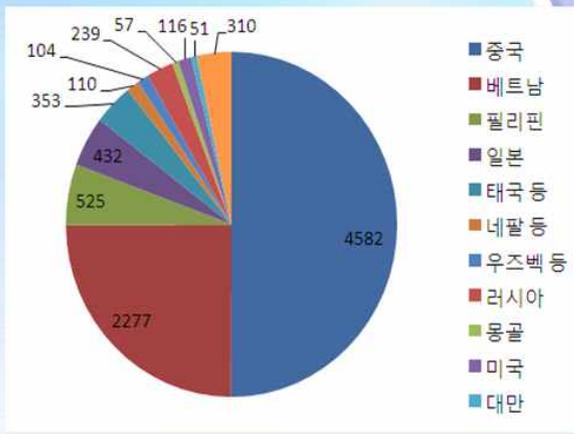
다문화가족지원 추진체계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합동결혼식, 고국방문사업 	결혼이민자정착지원 및 자립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동결혼식, 고국방문사업 모국어서적, 한국어교재 보급 	다문화가족자녀 성장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 무상보육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별달 지원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이해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 축제개최, 홈페이지 확대 민간 우수프로그램 공모
--	--	--	--

다문화가족 기본현황

결혼이민자 및 자녀 현황
(2011. 1. 1 현재)

구분		계	남	여
계		15,199	3,774	11,425
결혼 이민자	소계	9,156	755	8,401
	국적취득자 (혼인귀화자)	2,781	87	2,694
	국적미취득자	6,375	668	5,707
자녀		6,043	3,019	3,024

출신국가별 현황



정책 추진체계 확대

DYNAMIC
BUSAN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8개소
- 남구, 사상구, 부산진구, 동래구, 북구, 해운대구, 사상구, 기장군
- 교육프로그램 : 한글, 컴퓨터, 가족관계 통합프로그램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확대

- 대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용이 힘든 취약계층
- 내용 :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제공
- 방문가정 : 방문 지도사 109명, 800가정

정책 추진체계 확대

DYNAMIC
BUSAN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 대상 : 결혼이민자 및 가족 중 의사소통과 정보제공이 필요한 분
- 내용 : 센터이용자 초기상담, 가족간 의사 소통 지원, 자녀학교 알림장 번역, 공공기관 이용 시 통역, 기타 통·번역

이주여성위기관리시스템강화

- 이주여성 쉼터 : 1개소(Sweet Home, 부산진구) ☎804-1366
- 정원 15명, 자격증 취득교육, 긴급피난처 등
-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 ☎1577-1366
- 부산시립의료원내, 상담, 의료, 법률, 출국 지원 등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DYNAMIC
BUSAN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 대 상 : 결혼이민자 및 북한이탈주민 부부 29쌍
- 일 시 : 2011. 5. 26(목) 11:00
- 장 소 :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내 용 : 합동결혼식, 신혼여행(경주, 1박2일)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 대 상 :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23가족 85명
- 지원내용 : 부부와 자녀 왕복 항공료 등
 - 중국(6/22명), 베트남(12/44명), 필리핀(4/16명), 캄보디아(1/3명)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DYNAMIC
BUSAN

모국어도서 및 한국어교재 보급

- 모국어 도서 : 중국, 베트남 의 모국어도서를 본국에서 구입하여 다문화센터 등에 비치하고 열람, 대출
 - * 베트남(6종), 중국(5종) 등 월간잡지 및 교양도서
- 한국어 교재 보급 : 2,000권(상,하반기 각 1,000권)

국제결혼 행복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국제결혼을 하려는 남성, 국제결혼 부부
- 내 용 : 다문화사회와 양성평등, 가족관계와 소통, 다문화 이해 교육 등 1박 2일
- 기 관 : [사]삼산거주외국인지원협회 등 4개 기관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DYNAMIC
BUSAN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 무상보육

- 대 상 : 만 5세 이하 영,유아
- 내 용 : 다문화가족 자녀 보육료 100% 지원(소득 무관)
- 효 과 : 다문화가정의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 대 상 : 언어발달교육이 필요한 자녀(만12세 이하)
- 내 용 : 주2회, 회당 40분,
센터별 언어발달 지도사와 1:1 개별학습 지도

사회적 이해 제고 및 통합

DYNAMIC
BUSAN

부산 다모아 축제 개최

- 일 시 : 2011. 10. 8(토) 14:00
- 장 소 : 스포원 (분수광장)
- 내 용 : 전통음식 및 의상 체험, 다문화지원 센터별 작품전시,
전통놀이체험, 장기자랑, 각국 문화공연

다문화가족 홈페이지 확대

- 5개 국어 서비스, 센터별 통합시스템 구축
- 각종 생활정보, 한국어(E-book), 요리동영상 연결, 한국요리 레시피 등재(중국어, 베트남어) 등

사회적 이해 제고 및 통합

DYNAMIC
BUSAN

민간우수프로그램공모

- 주 체 : 반여종합사회복지관 외 2개소
- 분 야 : 취·창업, 자녀교육, 가족관계향상 ≡ 3개 분야
- 기 간 : 11년 3월 ~ 11년 12월
- 사 업 비 : 시비 보조금 35백만원

외국인근로자 상담실 운영

- 장 소 : (재)그린닥터스 ≡ 서면 온종합병원내
- 운 영 : 매주 토~일 오후, 5개 국어 상담원 8명 배치
- 내 용 : 법률, 생활, 취업, 신상 등 초기 정착 상담
≡ 결혼이민자 출신 상담.통역 공무원 배치(6.27~) : 부산광역시 근무



[2] 부산 경남지역 미등록 이주민 자녀들의 건강권과 보육권

/ 김사강(이주와인권연구소)

▶ 토론자 : 조소영(부산대학교 법대)

부산·경남 미등록 이주민자녀들의 건강권과 보육권

김사강(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원)

1. 부산·경남 지역에 사는 미등록 이주민 자녀들은 몇 명이나 될까

이주민 자녀, 특히 부모 모두가 이주민인 자녀들의 수치가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기 시작한 것은 2009년에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부터이다.⁵⁾ 그러나 체류신분을 구분하고 있지 않은 이 통계에 얼마나 많은 미등록 이주민들의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출생신고나 외국인등록이 되지 않아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가 없는 자녀들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모두 이주민인 가정의 자녀들을 거주 지역별로 따로 세고 있는 통계자료는 이것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부산·경남 지역에 사는 이주민 자녀들의 숫자를 계산한다면 18세 이하의 아동들은 416명이다.

<표 1. 외국인 주민 및 외국인 자녀의 수>

연도	외국인주민 (전국)	외국인주민 (부산·울산·경남)	외국인자녀 (전국)	외국인자녀 (부산·울산·경남)
2009	1,106,884	124,125 (11.2%)	4,205	121 (2.9%)
2010	1,139,283	127,519 (11.2%)	6,971	238 (3.4%)
2011	1,265,006	140,643 (11.1%)	9,621	416 (4.3%)

*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각 년도.

* 비고: 이 표에서 말하는 외국인 자녀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18세 이하의 아동만 포함된다.

행정안전부의 통계 외에 미등록 이주민 자녀의 숫자를 짐작하는데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는 법무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이다. 2011년 처음으로 이 통계연보에 19세 이하 불법 체류자가 따로 분류되어

5)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가고 있다는 인식이 정책적 담론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2006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는 매해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을 조사하여 통계수치로 발표해오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주장에 의하면 여기에는 90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불법 체류자까지)이 포함된다. 외국인 주민의 자녀의 경우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만 포함되다가 2009년부터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자녀들도 포함되기 시작했다.

집계되었는데 그 수는 6,698명⁶⁾이다. 그러나 이 통계의 한계는 비자 등의 서류를 받고 한국에 입국했다가 미등록이 된 아동들이 주로 포함된다는 것, 다시 말해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들은 거의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과 이렇게 미등록으로 체류하고 있는 아동들의 거주 지역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어쨌든 19세 이하 불법체류자를 모두 이주민의 자녀로 가정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추산한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외국인 자녀 비율에 곱하면 약 288명이 이 지역에 살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이는 그야말로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다.

공식적인 통계들 이외에 우리가 미등록 이주민 자녀들의 수치를 예측할 수 있는 조사로는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된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가 있다. 이 보고서는 이주민 가족들의 실태를 부분적으로나마 다룬 첫 번째 조사로 한국계(중국동포 등)와 비한국계, 등록과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혼인 여부 및 가족상황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한국계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59.9퍼센트와 비한국계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9.1퍼센트가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⁷⁾ 물론 미등록 이주민들이 2002년과 동일한 비율로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으리라는 근거는 미약하지만 2011년 법무부에서 발표한 20세 이상 불법 체류자의 숫자 161,817명을 가지고 한국계와 비한국계로 나누어 이 조사에서 밝힌 비율을 근거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의 숫자를 추정해보면 약 31,755명이 나온다. 그리고 이 숫자를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외국인 자녀 비율에 곱하면 약 1,365명이 이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처음부터 실제보다 적게 잡힌 수치에 여러 가지 가정들을 근거로 이리 저리 계산을 해가며 부산·경남 지역의 미등록 이주민 자녀들의 수를 적게는 288명에서 많게는 1,365명이라고 추정해보려고 애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어떠한 공공기관도 미등록 이주민으로서, 때로는 아무런 서류도 심지어 국적도 없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아동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가라는 기초적인 정보조차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부터 다시 한 번 되돌아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이다.

2. 부산·경남 지역 미등록 이주민 자녀들과의 만남

6) 이 수치는 14세 이하 불법체류자 4,342명과 15세~19세 불법체류자 2,356명을 합한 것이다. 자세한 수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1. <201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p.647.」 참고.

7) 한국계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운데 한국에 살고 있는 자녀가 1명인 경우 47.5%, 2명인 경우 12.5%와 비한국계 이주노동자 가운데 한국에 살고 있는 자녀가 1명인 경우 7.5%, 2명인 경우 1.1%, 3명인 경우 0.5%를 각각 합한 수치. 자세한 결과는 「국가인권위원회, 2002.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p.198.」 참고.

부산·경남 지역 이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15년간 활동해온 「(사)이주민과함께」에서는 지난 2010년에 부산, 김해, 양산을 비롯한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설문에 응답한 360여 명 가운데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34명에 불과했다. 이는 2010년 10월 당시 30.4퍼센트로 추정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비율에 크게 못 미치는 비중이었다. 결국 이 조사에서는 그나마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직장 건강검진의 대상이 되는 등록 이주노동자들과는 달리 단속에 대한 공포와 체류자격 상의 제약으로 의료서비스 접근 및 이용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2011년, 「(사)이주민과함께」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민들만을 대상으로 그들의 건강 및 의료기관 이용실태 조사를 다시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주민들의 상황이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인식 하에 그들에 대해서는 심층 인터뷰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역시 미등록 이주민들, 특히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주민들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들은 설문조사나 심층인터뷰에 응하는데 매우 조심스러웠으며 혹시나 미등록이라는 체류자격이 드러날까, 그래서 단속이나 추방의 대상이 될까 하는 우려에서 조사대상이 되기를 꺼려했다. 각국 출신의 자원 활동가들을 설문조사원으로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8개국 각 15명씩 총 120명을 설문조사하는 데에는 예상했던 한 달을 훌쩍 넘어 3개월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주민들을 꼭 포함시켜달라는 당부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원들이 만날 수 있었던 이주민 가족은 여덟 사례에 그쳤다. 자녀와 함께 사는 미등록 이주민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도 20가족을 목표로 했었으나 3개월 동안 11가족만을 만날 수 있었다.⁸⁾ 물론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다면 더 많은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곤란해 하는 이들에게 어떠한 이익도 장담할 수 없는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강행하는 것이 사실을 파악하는 데나 이후에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목표 응답자 수를 맞추기 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포기했다는 것을 밝히고 싶다.

8) 설문에 응답한 이주민들 가운데 자녀를 키우고 있는 8가족을 모두 인터뷰 했고, 추가로 3가족을 더 인터뷰 했다.

<표 2. 인터뷰 응답자 자녀들의 국적 및 성별>

국 적	인터뷰응답자의 자녀 (명)	
	여 아	남 아
우즈베키스탄		1
중 국	2	3
베 트 남	2	3
필 리 핀	1	
소 계	5	7
합 계	12	

앞서도 밝혔지만 부산·경남 지역에 살고 있는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들은 288명일 수도 있고 1,365명일 수도 있고 혹은 2,000명, 3,000명일 수도 있다. 지난 3개월간의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틀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이 지역 미등록 이주민 자녀들은 가장 작게 잡은 수치의 이십분의 일에도 못 미치는 고작 12명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번 조사만을 가지고 부산·경남 지역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한 아동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그들이 겪고 있는 반인권적인 처우들이 무엇인지를 일반화시켜서 말 할 수는 결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가 모든 미등록 이주민 자녀들의 상황을 대변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를 통해서 그들이 겪고 있는 공통된 어려움이나 그들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권리들, 중앙정부나 지자체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수많은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들에 대해서는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야말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이주민, 특히 어린 자녀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3. 출산과 출생신고

인터뷰에 응한 이주 여성들은 모두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얼마 되지 않아 일을 그만두었다고 한다. 사무직이 아닌 생산직에서, 그것도 분진이 많거나 유해 화학 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일을 하던 이들이 많았던 터라 태아의 건강을 위해 일을 더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미등록 신분이라 여차피 직장에서 출산 휴가나 수당을 기대할 수 없기에 자신과 태아의 몸을 먼저 생각한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인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 혹은 남자친구의 수입

9) 조사 대상 자녀들은 모두 한국에서 출생했으며 만 6세 이하였다. 인터뷰한 11가족 가운데 1가족(중국)이 유일하게 자녀 둘(남매)을 키우고 있었다.

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임신 과정 중에 받아야 하는 각종 검사와 출산 및 입원(자연분만의 경우 3일 내외, 제왕절개의 경우 7일 내외)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들 큰 부담이었다고 털어 놓았다. 대부분 남편 혹은 남자친구의 수입이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아야 220만원 정도였는데 의료보험마저 없으니 최소한 20~30만원이 드는 임신 중 검사는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주민 단체나 종교기관의 도움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협력병원에 다닌 여성들을 제외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정보가 없었던 여성들은 모두 임신기간 동안 한두 번밖에 병원에 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산 비용은 자연분만의 경우 적게는 40만원¹⁰⁾에서 150만원이, 제왕절개의 경우 100만원에서 300만원이 들었다.

임신과 출산까지는 병원비만이 문제가 되었으나 일단 출산 후에는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에 맞닥뜨린 경우가 많았다. 가장 큰 문제는 자녀의 출생신고였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는 대사관에서 아예 미등록 이주민 자녀의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있었다. 대사관 측의 주장은 베트남 여성들 가운데 한국 남성과 결혼했다가 이혼 등의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가출해 베트남 남성과 동거 중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될 경우 아이의 친부가 한국 남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받아 친부가 확인이 된 이후에 출생신고를 받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아니라 이미 베트남에서 결혼을 하고 한국에 입국한 부부의 자녀의 출생신고도 까다롭게 하는 것으로 보아 그러한 주장은 별 설득력이 없게 들린다. 어쨌든 인터뷰를 했던 베트남 출신 이주민 가족들은 다섯 가족 모두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주위의 친구들의 사례를 들려주며 현재 베트남 대사관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고 여권을 만들어 베트남에 보내기 위해서는 브로커를 통해야 하며 그 비용이 8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든다고 했다.

자녀의 출생신고가 어려운 것은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민들도 마찬가지였다. 인터뷰를 했던 한 가족은 아들의 출생신고를 위해 서울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세 번이나 찾아가야 했다고 한다. 대사관 측에서는 “왜 엄마가 불법이면서 아이를 한국에서 낳았냐”고 하며 출생신고를 받아 줄 수 없다고 하다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아이까지 데리고 여러 번 찾아가니 “(출생신고와 여권 발급을) 해주기는 하겠지만 3개월 후에 우즈베키스탄에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너희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너를 보내겠다”고 했다고 한다.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을 어긴 것이 자국 대사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불법 체류자”가 많은 국가에 대해 이후 고용허가제 쿼터를 줄이겠다는 한국 정부의 협박이 작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10) 이는 중국 이주여성들의 경우로 교회의 소개로 화교 의사가 있는 산부인과에 다녀 거의 70~80%정도 할인을 받아서 가능했다.

여러 나라에 자국민을 이주노동자로 보내고 있는 필리핀이나 중국 등은 비교적 미등록 이주민 자녀의 출생신고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자국의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둘째 자녀부터는 태어나면 한화로 2,000만 원 정도 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이는 중국 밖에 사는 이주민들에게도 적용되어 둘째를 낳아 기르고 있는 중국 가족의 경우 둘째에 대한 출생신고는 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많은 중국 가족들이 아이가 둘 이상 생기면 벌금 때문에 아예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포기하기도 한다고 전해주었다.

미등록 이주민들이 이처럼 다양한 법적·제도적 제약이나 신분상의 한계로 자녀의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그 자녀들은 아무런 서류도 없고 국적도 없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뿐만 아니라 출생신고가 되더라도 부모가 미등록이면 자녀도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없어 한국에 거주하는 한 자연스럽게 미등록이 된다. 이 자녀들은 출입국 관리법을 어긴 적이 없다.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밀입국을 하지도 않았고, 비자를 받은 적도 없으니 비자 기한을 어긴 적도 없다. 그저 한국에서 태어났을 뿐이다. 왜 이들이 출생 후 한 달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불법 체류자”가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4. 건강권

앞서 언급했듯이 많은 미등록 이주민 자녀들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아예 적이 없거나 외국인 등록이 되지 않아 미등록으로 살고 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그렇기에 출생 이후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부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가 함께 하는 사업 가운데 만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국가필수 예방접종(8종, 22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보건소를 이용하게 되면 전액 무료이고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일부를 지원하는데 이 때 본인 부담금은 15,000에서 16,000원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미등록 이주민 자녀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실제로 인터뷰에 응답한 이주민들은 자녀들이 거의 10번 넘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했는데 그 때마다 적게는 2~3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이 넘는 병원비를 지불했다고 했다. 한 중국 어머니의 경우 아이의 예방접종을 위해 근처 보건소를 찾았으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접수조차 받아줄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¹¹⁾ 또 다른 중국 어머니는 동네 보건소에서 한 번 예방접종을 받았는데 얼마 뒤 전화를 걸어와 아이의 외국인 등록번호를 묻기에 그 다음부터는 혹시나 단속이 될까봐 가지 않았다고 한다.

11) 실제 보건소에서는 미등록 이주민이라 할지라도 임의 번호를 부여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2011년 10월, 「(사)이주민과함께」에서 부산에 있는 16개 보건소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미등록 이주민 혹은 그 자녀들에게 문제없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두 세 곳에 불과했다.

워낙에 어린 나이에는 잔병치레가 많기는 하지만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들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나 감기 등을 달고 사는 아이들도 많았다. 예를 들어 인터뷰를 위해 찾았던 김해의 한 베트남 이주민 가정은 단칸방에 유일하게 있는 창문을 열면 바로 축사가 있었는데 손을 뻗으면 소의 머리도 쓰다듬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웠다. 쇠똥 냄새가 진동하는 이 집에 사는 15개월 된 아이는 감기와 열이 끊일 날이 없다고 했다. 다른 가족들도 사정은 비슷해 햇볕도 들지 않고 습한 단칸방에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바퀴벌레가 아이들 몸 위로 기어 다녀도 예사롭지 않게 생각할 정도였다. 그러나 역시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파 병원에 가게 되면 부모들은 무척 부담스러워한다.

외래진료비도 만만치 않지만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하면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생후 28일까지의 신생아에 한해 입원 진료 시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진료비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생후 29일부터 6세 미만의 아동은 총 진료비의 10%만 부담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의료보험이 없는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일 뿐이다. 한 베트남 부부는 한밤중에 아이가 아파 들쳐 업고 응급실에 뛰어 갔는데 보증금 100만원을 우선 요구해 하는 수 없이 다음 날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병원에 가야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편법을 쓰는 경우도 생긴다. 한 중국 어머니는 딸이 8개월 때 큰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바로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 하루 있었는데 20만원이 나왔다. 다음날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비슷한 또래의 딸이 있는 중국인 친구에게 가서 그 딸의 의료보험 카드를 빌려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의료보험이 있었는데도 피부이식 수술에 200만원이 들었다. 그러니 보험이 없었으면 최소한 500만원은 나왔을 것이다. 아이는 현재 다섯 살인데 아직도 병원에 다니고 있으며 여전히 그 친구 딸의 의료보험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미등록인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다른 사람의 의료보험 카드를 빌려 쓰는 일이 아마 종종 있으리라 짐작된다.

비자가 있는 경우라고 해서 모두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즈베키스탄 부부의 아이는 태어날 때 엄마와 아이 상태가 모두 좋지 않아 의사의 진단서로 G-1 비자를 신청해 받을 수 있었다.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G-1비자 소지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공단의 통보에 의료보험을 만들 수 없었다. 이후 아이는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당시 부산 의료원은 미등록에게만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이의 G-1비자가 만료되기를 기다렸다가 재연장을 하지 않고 미등록인 상태로 수술을 받아야 했다. 또 한 중국 부부는 부인이 학생 비자를 갖고 있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동반비자(F-3)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 본인도 가입 절차를 몰라 보험을 갖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아이도 보험이 없었다. 이후 아이가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체류자격이 있어 역시 의

료원의 무료수술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다행히 교회의 소개로 수술비를 반액 할인해주겠다는 병원을 구할 수 있었다.

이처럼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들은 의료보험이 없고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나 병원을 이용할 때 정부가 아동들에게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혹시 미등록인 것이 밝혀져 단속을 당할까 걱정을 하기 때문에 크게 아프지 않은 경우 아예 병원조차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의료보험이 없는 것은 병원 이용에 제약을 가져올 뿐 아니라 보육시설 입소에도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다.

5. 보육권

대다수의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도 다시 일을 하게 된다. 한국에 부모나 친지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은 보육시설 뿐이다. 그러나 문제는 보육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2011년 정부에서 정한 미취학 아동 보육료 한도액은 연령에 따라 적게는 177,000원에서 많게는 394,000원이다. 그리고 2009년 9월부터 영유아 보육법 제10조에 의해 국공립은 물론 민간까지 어떠한 형태로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정부로부터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은 5세 이하 아동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보육비와 교육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특히 다문화 가정 아동은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민 가정은 정부의 정의상 “다문화 가정”이 아니다. 부모 가운데 한 쪽이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보육료 지원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¹²⁾

인터뷰를 했던 가족들의 경우 아직 아기가 한 돌도 되지 않아 여전히 어머니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두 세 가족만 제외하고는 모두 자녀들을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보육료는 15만원에서 35만원으로 다양했다. 이들은 정부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종교기관의 보조나 어린이집 원장의 재량으로 조금씩 할인을 받아 그나마 적은 돈을 내고 다닐 수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럴지 못한 경우 주위에서 40만원이 넘는 돈을 내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친구들도 보았다고 한다. 보통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이 남성의 70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서 실제로 어머니 월급의 거의 반은 아이의 보육료에 들어간다고 보

12) 보건복지부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이러한 보육료 지원 혜택은 주민번호가 있는, 다시 말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들에게만 해당된다. 따라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일 경우 미등록이 아니더라도, 다시 말해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아동들도 보육료 지원은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면 맞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낸다고 해서 보육시설 입소가 쉬운 것은 아니다. 미등록 이주민 자녀를 보육시설에서 받아주기 힘들어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아이가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안전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아예 원생으로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곤란해 하는 경우도 있다. 겨우 사정을 해서 입소를 허락한다 해도 주위 한국인을 보증인으로 데려오라거나 무슨 일이 생겨도 어린이집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또 일의 특성상 야간근무가 잦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아이를 시간 맞춰 데리러 가기 힘든데 이러한 일이 몇 번 생기면 어린이 집에서 아이를 더 이상 맡아줄 수 없다는 통보를 하기도 한다. 아이 맡길 곳을 찾는 동안 일을 며칠 쉬다가 어머니가 해고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아이를 집에 두고 문을 걸어 잠근 채 출근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방치된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 한들 아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등록 이주민 자녀들의 보육권은 요원한 것이 되고 만다.

6. 마치면서

유엔 아동권리 협약은 이 협약에 비준한 당사국이 자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아동에 대해서 부모의 출신 및 신분에 관계없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제7조), 필요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제24조),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제18조)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1991년에 이 협약에 비준했으며 위의 세 조항에 대해 처음부터 유보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는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권리가 주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히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인터뷰에 응한 미등록 이주민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종종했다. “우리에게 공짜로 무언가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돈을 낼 테니 우리 아이도 의료보험을 가질 수 있게 해 달라. 우리야 그렇다 쳐도 아이가 무슨 죄가 있는가,” “우리 아이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면서 한국말밖에 못한다. 본인은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자기가 한국 사람은커녕 아직 출생신고도 안 났고 국적도 없다는 걸 나중에 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미등록 이주민들, 특히 자녀를 키우는 이들의 바람은 거의 비슷하다. 죽을 때까지 한국에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한국 정부에 대단한 복지 혜택을 요구하지도 않을 테니 그저 아이와 함께 있는 동안은 마음 편

히, 최소한의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인터뷰를 했던 필리핀 이주민 부부는 큰 아이를 필리핀에 보내고 둘째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들이었다. 큰 아이는 남들 다 보내니 보냈지만 보낸 뒤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둘째는 보낼 수 없다고 했다.

미등록 이주민 자녀들도 천부적인 인권을 갖고 태어난, 이 땅에 사는 아동들이다. 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출생신고, 건강보험, 보육 등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인권국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 자녀들에게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주노동자들에게 가족 동반권을 주지 않고 자녀를 키우는 이주민들에게 체류자격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서 이주 아동의 권리를 논하는 것은 위선이고 기만일 뿐일 것이다.

[3]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 사례

/ 이화숙(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

▶ 토론자 : 한춘희(부산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 사례

이화숙(대구가톨릭대학교 연구교수)

1. 들어가기

2000년 이후 한국사회에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족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다문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주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과 경제적 자립지원을 통하여 거시적인 차원의 사회통합을 목표로 한다. 2005년 이후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다양해지고, 다문화가족의 결혼유형 역시 재혼부부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은 초기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문제로부터 시작하였다. 이후 한국사회 적응과 가족 통합문제, 자녀들의 언어발달과 학습능력 문제로 확대되어왔다. 최근에는 재혼을 한 결혼이주여성(혹은 결혼이주남성)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따라 성장과정 중에 입국하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정책 마련이 새로운 다문화정책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중도입국청소년은 최근 새롭게 등장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대상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외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다가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어머니 혹은 아버지에 의해 성장 과정 중에 입국한 청소년이다. 2011년 9월 통계로 결혼이주민의 86.5%가 여성(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immigration.go.kr> 2011년 9월 통계월보 참조)인 점을 감안하면 중도입국청소년의 절대 다수가 어머니의 국제결혼을 계기로 한국사회로 이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출생과 성장 초기의 경험이 외국에 있음으로써 한국어를 습득하지 못한 미성년자인 점, 일정기간 어머니(혹은 아버지)와 헤어져 부모 이외의 일가친척에 의해 양육되었다는 점, 출신국과는 판이한 한국사회의 교육 체계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서 이들은 일반적인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대상과는 또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다문화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글에서는 대구의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참여하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 5명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들의 한국사회 정착과 적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선행 연구와 현황을 추정하는 데 참고가 될 만한 통계 자료들을 검토하고, 사례를 통해 이들의 한국사회 정착과 적응 양상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2. 선행 연구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주로 토론회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학계의 심도 있는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0년 11월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최로 《이주아동교육권 현황 및 개선방안 토론회》가 있었으며, 2011년 2월에 국회 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에서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 및 과제 진단 토론회》가 진행된 바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과 관련한 연구 보고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 용역으로 서울대학교 중앙다문화교육센터(2010)에서 진행한 《다문화가정 동반·중도입국 자녀 교육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가 있으며, 이들의 초등교육 적응을 위한 연구 보고로 한국교육개발원(2010)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입학초기 학교적응 프로그램 - 중도입국 학생》 등이 있다. 공교육 편입을 지원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교육 교재가 마련된 것이 없는데 한국교육개발원(2010)은 공교육 현장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교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런데 이 책은 중도 입국 청소년이 효과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저학년용 교재로 ‘학교생활 기초기능(1); 한국어, 학교생활 적응(1); 학교 문화, 학교생활 적응(2); 자아 찾기, 학교생활 기초기능(2); 컴퓨터’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교재는 중도입국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므로 한국어를 모르고 입학한 학생에게는 교재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으며, 별도의 한국어 교육을 통해 한국어 학습이 선행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신현옥(2010)은 이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에 대해 언급하면서,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으로 입국하는 나이가 10대 중·후반일 때는 대부분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쉽게 적응하기가 어렵다. 언어가 서투르기 때문에 본인의 나이에 맞는 학년으로 입학하지 못하고 적게는 두세 살, 많게는 다섯 여섯 살이나 어린 학생들과 학교를 다니는 경우도 있으며, 아예 학교에 들어가지 못해서 집에 고립해 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는 경우”도 있으며, 이들을 모국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이중 언어 인재로 키우기 위한 별도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교육 수요 조사, 교육권 등과 관련하여 한국사회의 공교육 진입과 적응, 학력 증진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다수가 한국의 공교육 현장에 정식으로 편입하지 못하고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교육단절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진단하고 그 대안 마련에 치중하고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우리 사회에 새로이 편입한 이주자로 교육 참여를 비롯하여,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에 대한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연구자들이 중도입국 청소년을 직접 만나 면담을 하기까지는 대상자 확보와 부모의 인터뷰 수락,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에서 기인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교육권과 관련한 것이라는 점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3. 현황 검토

행정안전부의 201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자료(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통합검색자료 중 “201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참조)에 따르면 ‘외국인주민 자녀’는 151,154명이다. 이들 중 ‘외국인-한국인부모의 자녀’가 126,317명으로 가장 많으며, ‘외국인부모의 자녀’가 9,621명, ‘한국인부모의 자녀’가 15,216명이다. 아래의 [표1]은 외국인주민 자녀의 국적별 현황을 조사한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제시한 것이다. ‘외국인주민 자녀’라는 용어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주민의 자녀 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으로, 결혼이주민의 자녀인 경우 ‘다문화가족 자녀’의 범주에 속하는 수치이다. 이들 ‘다문화가족 자녀’ 중에는 재혼한 어머니(혹은 아버지)를 따라 ‘입양’의 형태로 이주한 중도입국청소년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별도의 분류 과정을 통해 수치화하여 제시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표1]을 통해 중도입국 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외국인주민 자녀의 국적별 현황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에 포함되어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국적별 현황이 비례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표1] 외국인주민 자녀의 국적별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동북아						동남아						남부아	중앙아	미국	러시아	기타
		소계	중국	중국(한국계중국)	대만	일본	몽골	소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기타					
	151,154	85,989	34,852	33,186	1,191	14,510	2,250	54,974	34,256	13,937	2,082	576	4,123	1,783	2,414	1,207	1,090	3,697
외국인부모	9,621	7,859	2,683	4,692	102	290	92	1,240	691	426	52	21	50	158	64	38	38	224
외국인-한국인부모	126,317	69,639	27,765	25,023	1,044	13,907	1,900	48,275	29,945	12,393	1,799	502	3,636	1,263	2,087	1,060	900	3,093
한국인부모	15,216	8,491	4,404	3,471	45	313	258	5,459	3,620	1,118	231	53	437	362	263	109	152	380

중도입국 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정부 자료는 아직 제시된 것이 없다. 다문화정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에 대한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도입국 자녀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제시한 통계 자료를 구하기 어렵다. 부처별로 제시하는 추정치 통계가 다를 뿐만 아니라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도 아직까지 이루어진 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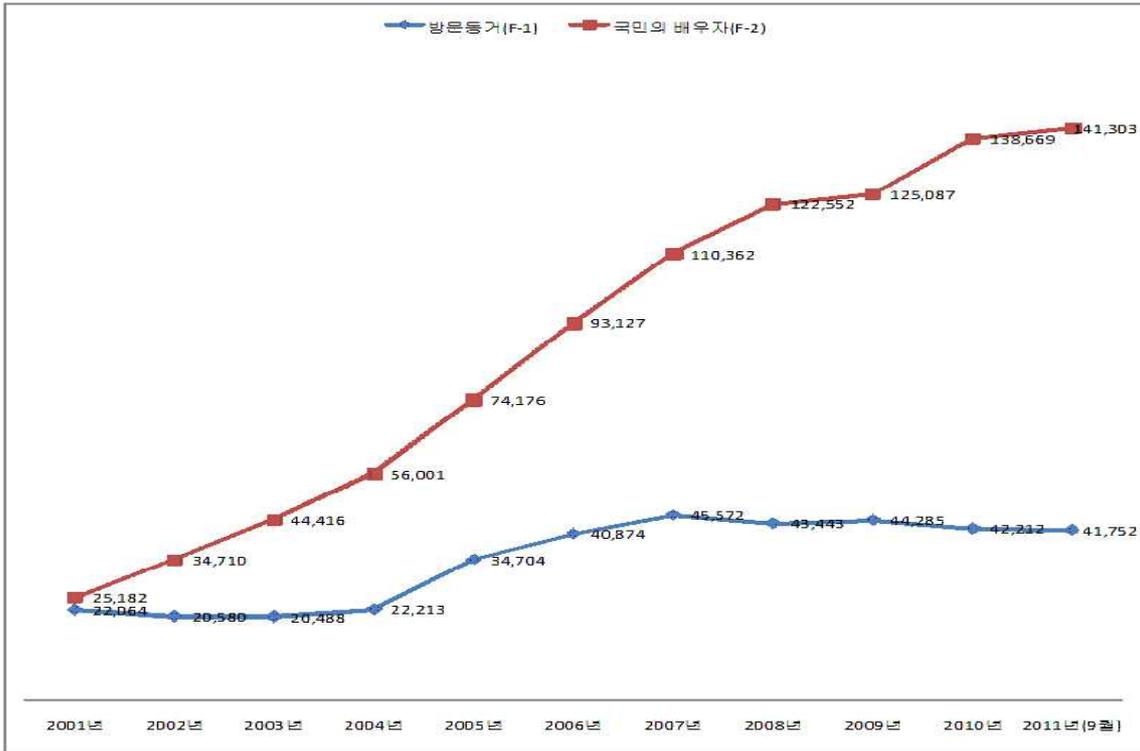
외국인정책위원회(2011 : 293-294)에 의하면 외국에서 성장하다 학령기에 입국하는 ‘동반·중도입국다문화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초기적응을 지원할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 동반·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지역 및 학교, 가정·사회생활의 실태를 조사하고 종합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지원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초기적응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 확대하고 전문자원봉사자에 의한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다. 2009년 다문화가족실태 전수조사에서도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실태 조사는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중도입국 자녀를 정책 대상의 영역으로 포함하려는 시도는 최근에 포착된 새로운 다문화가족지원 방향의 하나로 판단된다.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으로 이주하는 경로는 두 가지로 파악된다. 한국인 아버지(혹은 어머니)의 양자로 입양되는 것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어머니(혹은 아버지)의 초청을 통하는 방법이 있다. 입양을 통해 ‘한국인의 양자’ 자격으로 입국할 수 있는 나이는 18세까지이므로, 그 이상의 연령에서는 ‘배우자의 친자녀’의 자격으로 초청을 받아 입국할 수 있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한국에 입국할 때 이들은 ‘방문동거(F-1)’ 자격으로 한국에 거주하게 되는 바, 중도입국 청소년의 체류 현황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는 먼저 ‘방문동거(F-1)’ 거주자 현황을 참고할 수 있다.

아래의 [표2]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http://immigration.go.kr>)의 통계연보를 참고하여, 결혼이주인을 ‘F-1’자격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계량화하기 시작한 2001년부터 2011년 9월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방문동거(F-1)’와 ‘국민의 배우자(F-2)’ 자격으로 등록된 외국인 주민의 현황을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2] 방문동거(F-1)와 국민의 배우자(F-2) 자격 외국인 등록 현황

(단위: 명)



연도 체류자격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9월)
국민의 배우자(F-2)	25,182	34,710	44,416	56,001	74,176	93,127	110,362	122,552	125,087	138,669	141,303
방문동거(F-1)	22,064	20,580	20,488	22,213	34,704	40,874	45,572	43,443	44,285	42,212	41,752

위의 [표2]의 ‘방문동거(F-1)’ 자격을 갖는 외국인 등록 주민의 수는 ‘국민의 배우자(F-2)¹³⁾’ 즉 결혼이주민의 증가와 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 ‘방문동거(F-1)’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경우는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자와 거주(F-2)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이다(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immigration.go.kr>의 초청/사증에 관한 자료 참조). ‘방문동거(F-1)’ 자격의 거주자가 결혼이주민과 관련이 크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는 ‘방문동거(F-1)’ 자격 거주자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증가 추세를 함께 반영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됨을 알 수 있다.

13) 2011년 현재 ‘국민의 배우자(F-2)’는 2009년 이전에는 ‘F-1-3 및 F-2-1’ 자격이었다가, 2010년 이후 ‘F-2-1 및 F-5-2’로 자격 변동이 있었다. 위의 표는 이들 자격별 수치를 연도별로 분류하여 표시하지 않고 모두 ‘국민의 배우자(F-2)’로 합산하여 제시하였다.

아울러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중도입국 청소년이 증가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는 2009년 다문화가족실태 전수조사에 반영되었던 다문화가족의 결혼 유형과 결혼이주여성의 국내 모국가족 연결망 등이 있다.

[표3]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결혼 유형

(단위: %)

구분		부인, 남편 모두 초혼	부인 초혼, 남편 재혼	부인 재혼, 남편 초혼	부인, 남편 모두 재혼	계(수)
전체		65.6	9.6	7.2	17.6	100.0(107,262)
연령	24세 이하	86.1	12.8	0.5	0.6	100.0(22,507)
	25-29세	84.0	12.2	1.9	1.9	100.0(22,202)
	30-34세	77.0	10.6	5.8	6.6	100.0(19,465)
	35-39세	60.2	8.2	12.5	19.1	100.0(18,153)
	40-49세	31.1	4.9	17.0	47.0	100.0(19,161)
	50세 이상	8.2	3.6	9.4	78.8	100.0(5,774)
체류기간	1년 미만	71.0	12.2	4.0	12.7	100.0(10,083)
	1-2년 미만	69.3	12.3	5.2	13.2	100.0(14,414)
	2-5년 미만	63.1	10.9	7.6	18.4	100.0(36,165)
	5-10년 미만	63.0	7.4	8.9	20.7	100.0(24,577)
	10년 이상	67.8	6.9	7.3	18.0	100.0(22,036)
결혼연도	1990-1994년	78.9	5.6	3.7	11.8	100.0(2,006)
	1995-1999년	75.3	6.1	5.1	13.5	100.0(12,215)
	2000-2004년	62.7	8.3	8.2	20.7	100.0(26,884)
	2005-2009년	64.6	10.9	7.3	17.3	100.0(66,171)
국적	중국(조선족)	50.3	5.6	11.9	32.2	100.0(31,990)
	중국(한족 등)	58.0	7.6	10.4	23.9	100.0(30,384)
	베트남	80.9	17.0	0.7	1.4	100.0(22,317)
	필리핀	85.5	11.9	0.8	1.8	100.0(7,097)
	몽골	67.4	13.7	7.8	11.1	100.0(1,652)
	태국	77.0	8.2	5.4	9.3	100.0(1,576)
	캄보디아	78.9	19.8	0.4	0.9	100.0(2,322)
	일본	93.5	2.4	1.4	2.7	100.0(4,703)
	북미·호주·서유럽	90.2	4.1	2.5	3.2	100.0(438)
	기타	75.5	12.2	4.5	7.8	100.0(4,794)

※ 위의 표는 《2009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의 ‘혼인유형’(pp.321-329)을 참조하여 재구성한 것임.

[표 33] 결혼이주여성의 국내 모국가족 연결망

(단위: %)

		국내거주 가족친척	3개월 이상 국내 거주 가족 또는 친척					
			전체	어머니	남자형제	여자형제	전배우자 의 자녀	기타 가족/친척
국적	중국(조선족)	78.2	16.8	25.4	25.4	28.6	7.2	27.8
	중국(한족 등)	32.9	7.0	11.5	4.9	8.7	3.6	9.9
	베트남	27.4	2.0	6.6	1.7	11.5	0.5	8.3
	필리핀	28.9	1.7	5.2	2.9	11.5	0.6	10.9
	몽골	38.3	1.0	5.6	8.9	15.9	4.3	10.7
	태국	22.9	1.1	3.2	3.2	8.1	1.4	8.3
	캄보디아	27.8	1.6	2.6	3.1	11.2	1.7	11.7
	일본	6.2	1.0	1.3	0.7	3.3	0.3	1.4
	북미·호주·서유럽	30.8	8.3	9.9	5.6	9.2	4.0	14.2
	기타	30.8	4.6	8.4	6.5	11.1	1.5	10.4
거주 기간	1년 미만	27.2	2.8	4.7	2.2	10.0	0.6	12.1
	1-2년 미만	29.9	4.9	9.1	2.8	8.8	1.2	11.1
	2-5년 미만	40.4	8.0	13.3	7.4	13.1	3.4	12.8
	5-10년 미만	55.8	11.0	18.3	16.3	20.2	5.3	19.3
	10년 이상	52.0	8.4	14.1	15.9	21.0	4.6	16.6

※ 위의 표는 《2009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의 ‘국내 모국가족 연결망’(pp.368-370)을 참조한 것임.

위의 [표3]을 보면 주로 2000년대 이후에 결혼하여 한국에 5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35세 이상의 중국(조선족과 한족 포함)여성과 몽골여성이 재혼을 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표4]와 관련하여 보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중국과 몽골 여성의 전배우자의 자녀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다른 경우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재혼을 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배우자의 자녀가 ‘중도입국 청소년(혹은 자녀)’의 범주로 한국사회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성정 과정 중에 입국하는 외국 국적의 결혼이주자의 자녀를 분류하기 위해 법무부에서는 3월부터 ‘F-2’자격을 ‘F-2-1 국민의 배우자’와 ‘F-2-2 배우자의 친자녀’로 구분하여 새로운 체류자격을 신설하였다. 신설된 ‘F-2-2 배우자의 친자녀’는 ‘입양’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이 되므로 중도입국 청소년(혹은 자녀) 전부를 아우르는 기초 통계 자료를 생성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한 시점이다.

4. 중도입국 청소년 사례

4.1. 사례 대상자

이 글은 대구의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 5명의 한국 사회 적응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부모들의 인터뷰 수락을 거쳐 아이들을 만나 면담을 진행하고, 결혼이주여성인 어머니와 아버지의 면담을 병행 하고자 하였다. 대상자1은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대상자2~5는 중도입국 청소년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결국 이 글은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이들이 포함된 5가구 11인을 면담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34] 대상자1

구분	대상자1	양아버지	어머니
나이	10세	62세	30세
성별	남성		
국적	베트남	한국	베트남(국적 미취득)
입국	2011년 2월	-	2008년
학력	초등학교 3학년 재학 중	-	전문대 졸업
입국경로	입양	-	국제결혼
거주자격	방문동거(F-1)	-	국민의 배우자(F-2)
동거가족	본인, 어머니, 양아버지		

[표 35] 대상자2

구분	대상자2	양아버지	어머니
나이	17세	51세	46세
성별	남성	-	-
국적	중국	한국	중국 조선족(국적 미취득)
입국	2011년 6월	-	2006년
학력	중졸(중국 학력)	-	중졸
입국경로	입양	-	국제결혼
거주자격	방문동거(F-1)	-	국민의 배우자(F-2)
동거가족	본인, 어머니, 양아버지		

[표 36] 대상자3

구분	대상자3	양아버지	어머니
나이	18세	48세	41세
성별	남성	-	-
국적	베트남	한국	중국(국적 미취득)
입국	2010년 12월	-	2005년
학력	중졸(중국 학력)	-	중졸
입국경로	입양	-	국제결혼
거주자격	방문동거(F-1)	-	국민의 배우자(F-2)
동거가족	본인, 어머니, 양아버지		

[표 37] 대상자4

구분	대상자4	어머니의 배우자	어머니
나이	17세	43세	40세
성별	남성	-	-
국적	중국	한국	조선족(국적 취득)
입국	2011년 7월	-	2002년
학력	중졸(중국 학력)	-	중졸
입국경로	‘배우자의 친자녀’로 어머니가 초청	-	국제결혼
거주자격	방문동거(F-1)	-	국민
동거가족	본인, 남동생(6세), 어머니, 어머니의 배우자		

[표 38] 대상자5

구분	대상자5	양아버지	어머니
나이	15세	38세	34세
성별	여성	-	-
국적	우크라이나	한국	우크라이나(국적 취득)
입국	2004년 8월	-	2004년
학력	중학교 2학년 재학 중	-	4년대 졸업
입국경로	동반입국	-	국제결혼
거주자격	영주권자	-	국민
동거가족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남동생(7세), 어머니의 배우자		

사례 조사 대상자들 중 3명(대상자1~3)은 한국인 아버지의 양자로 입양되어 입국하였는데,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 대상자4는 국적을 취득한 어머니의 초청으로, 대상자5는 어머니와 함께 입국하였다. 대상자1~4는 모두 ‘방문동거(F-1)’ 자격으로, 대상자5는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다. 베트남 국적인 대상자1(10세)과 우크라이나 국적인 대상자5(15세)는 각각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이며, 중국 국적인 대상자2~4는 중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후 입국하여 현재 교육중단 상황에 처해 있다.

4.2. 가족 구성의 변화

중도입국청소년은 부모님의 사망과 이혼 등을 겪으며 가족구성원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사례 대상자 5명의 가족구성원 변화를 살펴보면 보통 세 차례 이상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이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인 혼란은 성장 과정의 불안 요소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주 후 중도입국 청소년은 가족 구성과 함께 거주하는 나라가 이동하는 확대된 형태의 총체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대상자1(10세, 베트남, 男)은 어머니와 한국에서 재결합하기까지 가족 구성원이 모두 네 번의 바뀌었다.

[표10] 대상자1의 가족구성 변화

동거기간	동거가족	거주국
2001년~2006년	본인, 아버지, 할머니, 아버지(베트남), 어머니	베트남
2006년~2008년	본인, 어머니	
2008년~2011년	본인, 외할머니, 이모, 외삼촌	
2011년 2월~현재	본인, 어머니, 양아버지(한국인)	한국

대상자1은 2001년 출생으로 베트남인 아버지가 2006년 오토바이사고로 사망한 후, 모자(母子) 가족으로 약 2년 동안 생활하다가 2008년 어머니가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하면서 2011년 2월까지 외가식구들과 지내게 되었다. 2011년 2월 한국인 아버지의 양자로 입양되어 한국으로 오기까지 약 4년 동안 어머니와 떨어져 초등학교 교사인 외할머니와 중학교 음악교사인 이모, 중학교 체육 교사인 외삼촌과 함께 생활했다. 대상자1은 학교에서 돌아온 후 주로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았고 그럴 때마다 엄마 생각이 많이 났었고 한국에 있는 엄마에게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표11] 대상자2의 가족구성 변화

동거기간	동거가족	거주국
1994년~1997년	본인, 아버지, 어머니, 형	중국
1997년~2003년	본인, 할머니	
2003년~2011년	본인, 고모	
2011년 6월~현재	본인, 어머니, 양아버지(한국인),	한국

대상자2는 출생 후 약 4년 동안 가족이 함께 생활하다가 부모님의 이혼으로 가족 전체가 떨어져서 생활하게 된다. 생부와 7살 위의 형과는 1997년 이후 지금까지 함께 생활한 경험이 없으며, 2011년 6월에 한국에서 어머니와 재결합하기 전까지 15세 때 중국에서 어머니와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주로 친할머니와 고모와 지냈으며, 중학생 때부터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서 썼다고 한다. 현재 베이징에서 생활하고 있는 25세의 형도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오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표12] 대상자3의 가족구성 변화

동거기간	동거가족	거주국
1993년~2005년	본인, 아버지, 어머니	중국
2005년~2010년	본인, 외할머니	
2010년 12월~현재	본인, 어머니, 양아버지	한국

대상자3은 출생 후 13년 뒤에 부모님이 이혼하고, 2005년 어머니가 한국인 남성과 재혼한 후 약 6년 동안 중국에서 외할머니와 생활하였다. 2010년 12월 한국에서 어머니와 재결합하기 위해 1년 동안 중국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며 여러 가지로 한국생활을 준비해 왔었다고 한다.

[표13] 대상자4의 가족구성 변화

동거기간	동거가족	거주국
1994년~1995년	본인, 아버지, 어머니	중국
1995년~2002년	본인, 어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2002년~2011년	본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2011년 7월~현재	본인, 어머니, 어머니의 배우자, 남동생(6세)	한국

대상자4는 출생 후 1년 뒤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조선족인 외갓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였다. 외갓집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한국어로 대화는 가능하지만 중국에서는 한족 학교에 다녀서 독해 능력이 거의 없다. 어머니는 외조부님과 함께 장사를 하였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한다. 2002년 어머니가 한국인 남성과 재혼을 하여 이주한 뒤 외할머니·외할아버지와 함께 지냈다. 2011년 7월 한국에서 어머니와 재결합하여 현재 한국인 남동생과 어머니, 어머니의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표14] 대상자5의 가족구성 변화

동거기간	동거가족	거주국
1996년~2003년	본인, 아버지, 어머니	우크라이나
2003년~2004년	본인, 어머니	
2004년 8월~현재	본인, 어머니, 어머니의 배우자, 남동생(7세), 할아버지, 할머니	한국

대상자5는 출생 후 7년 뒤인 2003년에 부모님의 이혼으로 1년 간 어머니와 둘이 우크라이나에서 핵가족으로 생활했다. 2004년 8월 어머니의 재혼으로 함께 한국으로 이주하여 현재 약 6년 동안 대가족 생활을 하고 있다. 한국인 할머니, 할아버지와 지내는 데 아무런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으며 오히려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한다.

4.3. 적응 과정과 교육 참여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남성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어머니의 초청으로 ‘배우자의 친자녀’ 자격으로 입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동거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중요하다. 아래 [표15]는 사례 조사 대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참여하고 있는 교육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15] 조사 대상자의 교육 참여 현황

	거주기간	교육 참여 내용	참여 기관
대상자1	9개월	초등정규교육, 방과후학교(국어, 컴퓨터, 카이로봇) 한국어 방문교육 미술 영어	○○초등학교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어린이센터 교회
대상자2	5개월	한국어 교육 한국사회 적응 교육 다문화 이해 교육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상자3	12개월	한국어 교육 한국사회 적응 교육 다문화 이해 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3단계)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반야월 복지관 영남대학교(법무부 위탁 교육기관)
대상자4	4개월	-	-
대상자5	87개월	중등정규교육 기타 사설 예능 교육	○○중학교 사설학원

대상자1과 대상자5는 각각 10세와 8세에 중도 입국한 경우인데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대상자5의 경우 8세 때 어머니와 함께 입국하여, 양아버지의 권유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약 3개월 동안 유치원에 다녔다고 한다. 입국하고 바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일일 학습지를 시작하여 9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으나 진급시험을 쳐서 10세에 3학년 과정으로 월반했는데, 이 과정에도 양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고 한다. 대상자5는 현재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학교 성적도 우수한 편이다.

<대상자5의 어머니>

우리 한국에 와서 바로 8살인데 남편이 유치원에 보냈어요. 유치원에서 키도 제일 크고... 3개월 다니다가 입학했어요. 미리 한국아이들하고 잘 지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보냈어요. 또 눈높이 공부시키고 학습지도 바로 공부시키고. 어려서 또 바로 입학하니깐 한국말 못해서 1학년부터 다시 하고 (1학년) 끝나고 남편이 시험 보게 해 달라고 그래서 시험 보고 바로 3학년으로 올라갔어요.

우리 딸하고 나는 이제 한국에서 계속 살 거예요. 엄마가 우크라이나에 계시는데 내가 한국 국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외국사람 국적 두 개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내가 한국 국적을 했어요. 우리 딸은 영주권 있지만 나중에 국적 해야지요. 한국에서 좀 편하게 사는 그런 일 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대상자5>

처음에 초등학교에서 문제가 많았어요. 애들끼리 외국 사람이라고 많이 놀리고. 지금은 중학생이니까 애들이 아이 아니니까 저를 친구라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때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거 바로 말로 하니 상처가 많았어요. 이제는 많이 느끼는데 애들이 잘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8살에 유치원에 잠깐 다녔어요. 학교에 입학해서 한국어는 좀 지나니까 익숙해 졌어요. 처음에 입학해서 조금 어려웠는데 지금은 다 잘해요. 작년에 1등도 했어요. 지금은 사회하고 국어가 조금 어려워요. 사실 수학하고 국어는 너무 어려워졌어요.

나는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계속 살 거예요. 몇 개월 전에는 의사사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은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꿈이 계속 바뀌어요.

대상자1이 입국하기까지는 양아버지의 노력이 컸다. 대상자1의 양아버지는 거주지 구청에 입양 신청을 하고 입양 허가를 받은 후 베트남에서 다시 입양 절차를 받아 대상자1을 데려오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입양중개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중개사무소에 위탁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일도 겪었다. 직접 베트남으로 가서 베트남 입양국, 법무부, 경찰서를 두루 거쳤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불법체류의 가능성 때문에 한국 대사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듯 하었다고 한다. 결국 대상자1의 건강이 좋지 못하여 베트남에서는 입양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고 초청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다고 한다. 입국 초에 대상자1은 건강이 좋지 못하여 병원을 두루 다니면서 치료부터 받게 되었다고 한다.

<대상자1의 양아버지>

목에 흑도 몇 개 있고 올 때, 다리도 다쳐서 왔고 병원에 가서 깁스도 했거든요. 한 달간. 이도 전체가 다 상했다고 합니다. 보건소에 가보니까. 보건소 세 번 정도 다니면서 전부 치료하고. 흠 메우기 하고, 충치 치료하고 뽑을 거 뽑고 전부 이 치료하고...

베트남에서 다친 지도 모르고 염증이 생겨서 왔습니다.

건강에도 아주 안 좋았습니다. 몸이. 목에 흑도 있고 다리도 다쳐서 걸지도 못하고 이도 다 상하고...

아이가 보니까 이제 학교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어린이센터생활 다 잘 적응하고 모습도 굉장히 밝아졌고 성격도 좀 여기 와서 명랑해졌고... 베트남에서는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만나 봐도, 말을 잘 안 하는데 여기 와서는 굉장히 밝아 졌습니다. 엄마 옆에 있으니까 엄마의 사랑의 힘이 큰 것 같고... 사랑해주려고 자꾸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아버지가 많이 사랑해 주는 건 아들도 알겁니다.

대상자1의 양아버지는 아이를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과정을 겪었다고 한다. 인근 초등학교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교육한 경험이 없던 터라, 1년 정도 한국어를 배운 후에 입학할 것을 권유했었다고 한다.

<대상자1의 양아버지>

아이를 학교에서 안 받아 줘서 집에 데려 왔는데 집에 아내와 제가 전문 지식 없는 사람이 1년을 집에 데리고 있으면 아이를 바보 만들 것 같더라고. 저는 군에서 생활하면서 교관도 하고 훈련병을 지도하고 가르쳤거든요, 10년 동안. 잠이 도저히 안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교육기관에 여러 군데 이야기 해가지고 입학할 시켰는데 그런 문제는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선이 꼭 되어야 합니다.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와가지고 정말 괴로웠습니다. 아이를 안 받아 줘가지고.

<대상자1>

한국말 조금 못 알아듣고 선생님과 그냥 해오름반 교실에서 공부합니다. 3월부터 6월까지 스스로 공부하고 또 엄마도 같이 좀 하고, 친구들도 조금 도와줬습니다. 한국어 못한다고 놀리는 친구 없었어요. 한국어 못해도 학교에 가는 거 힘들지 않았어요. 친구들도 있고 또 공부 좋아하니까 학교 빨리 가고 싶었어요. 6월 달부터 한국말 다 잘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대상자1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학교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 지원을 아울러 받고 있다. 한국어 교육은 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국어 과목을 가장 어려워하는데, 정규 수업 이외에도 특수아동들을 위한 특별반인 해오름반의 국어반과 방과후 학교 국어반 수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대상자1의 국어과목 성취도평가 성적은 6월에 5점(학년 평균 17.9)에서 10월에는 13점(학년 평균 18.3)으로 향상되었다. 현재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으로 화·수·목·금요일에 국어·사회·도덕과목을 보충 지도하는 교사: 학생의 1:1멘토링 수업이 지원되고 있다.

대상자5와 대상자1이 8세와 10세에 입국하여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공교육에 성공적으로 편입한 것에 비해 10대 후반에 입국한 대상자2~4는 교육단절을 겪고 있다. 대상자2와 대상자3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한국어교육에 참여하고 있는데, 대상자4는 일체의 교육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대상자2와 대상자3은 어머니와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가족의 양자로 입양되었으므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육에 참여¹⁴⁾할 수 있다. 대상자4는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이주한 후 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인 어머니의 초청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으므로 공식적인 다문화가족지원 대상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상자2~3과 법적인 지위가 다르다.

<대상자2>¹⁵⁾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싶은 희망으로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고 싶어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은 생활환경이 중국보다 더 좋아서 편하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한국에 와서 운동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 타기,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격에는 변화가 거의 없지만, 생활이 안정적으로 된 것이 큰 변화입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른 한국 이해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상자3>

처음에는 한국에 오고 싶지 않았지만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서 왔어요. 한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싶어요. 지금 국적취득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가서 원예를 전공하고 싶어요. 계속 한국에서 엄마와 살고 싶어요. 한국에 와서 엄마와 함께 생활하니깐 내성적인 성격이 외성적(외향적, 필자 교정)으로 변화했어요.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잘 먹어요. 그러니까 몸무게도 늘어나고 키도 더 컸어요.

대상자2와 대상자3은 함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친구가 되었다. 이 둘은 한국인 또래 친구가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으니깐 한국인 친구를 사귄 기회가 없어서 많이 아쉽다고 한다.

14)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한 ‘다문화가족’이란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과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가리키는데 결국 가족구성원에 포함되어 있어야함을 알 수 있다. 《20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9명의 중도입국자녀가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였는데, 0~3세; 2명, 4~7세; 1명, 초등; 2명, 중등; 3명, 고등; 6명, 고등이상; 15명이다.

15) 대상자2는 한국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면담 내용은 대상자2의 중국어 답변을 한국어로 통역한 것을 수록한다. 대상자3은 일부 한국어 답변이 가능하나 중국어로 답변한 것은 역시 한국어로 통역하여 수록한 것이다.

대상자4는 조선족이신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면서 한국어를 말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다. 경상도 사투리를 구사하며 집에서 어머니와 대화할 때는 한국어를 잘하지만, 다른 사람과는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 국적 신청을 위해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테스트를 받으러 갔을 때, 대화가 아닌 문어체 문장을 독해할 수 없어서 한 문제도 풀지 못했다고 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글 교육을 받으면 독해력이 길러질 것으로 기대하고 센터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였으나 몇 회 참석하고는 포기하였다. 현재 동생을 돌보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주로 집에서 지내며, 외부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대상자4의 어머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외국인 아줌마들이고 또래 친구가 없어서 며칠 다니고 안 가더라구요. 처음에는 좋다고 갔는데 베트남, 필리핀 아줌마들이 애들 데리고 오니까 다 큰 머슴애가 좀 그런가 봐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갔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되더라구요. 아르바이트를 시켜봤는데 사회 경험이 없어서 며칠 못 하더라구요. 집에 있지 말고 식당이라도 일하면 좋겠는데 적당하게 잘 안 되네요. 일하다 보면 말도 빨리 늘 텐데 그런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어릴 때 밝고 그랬었는데 처음에 왔을 때 많이 변했더라고요. 지금은 얼굴은 확실히 밝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적이라고 말해요. 단지 집에서 심심하니 컴퓨터에 집착하는 경향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많이 머라 했지요. 혼을 많이 냈지요. 처음에는 많이 싸웠어요. 후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싸우고 나면 “엄마 잘못했어요.” 뭐 그런 말을 저한테 와서 해요. 점점 밝아지는 모습이 조금씩 보여요.

<대상자4>

한국말을 못하는 거는 한국에 처음 오니까 조심성이 생겨서 잘 하던 것도 발휘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집에서 엄마하고 말하는 거는 잘 돼요. 중국에서는 완전히 중국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한글에는 잘 모르겠어요. 읽어도 모르겠어요. 사회통합 시험을 치러 갔는데 한 문제도 못 풀었어요. 읽어도 뭐해야 하는지 모르겠고요.

대상자2와 대상자4의 어머니는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다. 대상자4는 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한다. 대상자3과 대상자3의 어머니는 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고 있지만, 아직 양아버지와 의논하지 않았다고 한다. 미성년자인 중도입국 청소년은 양자로 입양되었을 경우 2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국적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는 ‘F-1’ 자

격으로 거주하게 되는데, 취업 활동이 불가능하다. 대상자2와 대상자4의 경우, 한국어 교육과 취업 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취업을 위한 국적 취득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모국어 사용에 대해서는 모두 특별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대상자5는 이제 우크라이나 글을 독해할 수 없지만 괜찮다고 하였다. 대상자1은 나이가 어려서인지 그저 한국어를 빨리 배울 수 있으면 좋겠으며 베트남어도 계속 잘하고 싶다고 하였다.

<대상자5>

지금 우크라이나 말 다 잊어버리고, 엄마한테 문자 쓸 때 한국어로만 해요. 우크라이나 말로 문자는 못 쓰겠어요.

<대상자1>

지금 베트남어보다 한국어 더 쉬워요. 어려운 말 조금 잊어버렸습니다.

<대상자1의 아버지>

베트남에 있는 엄마한테 국어책을 다 모아가지고 오실 때 갖다 주면 ... 국어책이라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4학년 때 왔기 때문에 지금현재 실력이 4학년에 스톱돼 있거든... 베트남어 실력이... 베트남 국어책이라도 자꾸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국적을 가진 대상자2~4는 아직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짧고 집중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받지 않은 상황이며, 나이도 10대 후반이므로 자신들이 당연히 중국어를 영구적으로 발화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모국어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5. 나가기

이 글에서는 대구의 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한 중도입국 청소년 5명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 적응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였다. 이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어머니와의 재결합(혹은 동반입국)을 목

적으로 한국에 이주해 왔으며 이후 정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례 조사 대상자 4명은 현재 한국 사회에 적응 또는 정착의 과정으로 서로 다른 형태의 교육에 참여하고 있었다. 10대 초반의 대상자 2명은 본인의 연령대에 맞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정규교과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출신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입국한 10대 후반의 대상자 3명은 정규 교육에 편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1명이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사례 조사 대상자2와 대상자4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규 교육 참여와 학력 연장이 바로 한국 사회의 적응과 동일하다는 인식에 새로운 시각을 갖게 했다. 이들은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상급학교에 대한 진학에 큰 뜻을 보이지 않았다.

이번 사례 조사는 특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5명의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므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연령과 국적, 입국 경로, 가족 재구성 형태 등이 서로 다른 이들 5명의 중도입국 청소년과 가족들과의 면담을 통해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유추할 수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한국사회의 적응에 실패하고 학교 밖에서 배회하고 있는 것에는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의 부재에도 이유가 있다. 이들을 위해 학교 편입을 위한 한국어, 취업을 위한 한국어, 직업 교육을 위한 한국어 등 한국어 교육과 교육 수요자의 요구가 병행하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재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한국 사회에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원활한 가족재결합과 한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주로 초기적응 지원에 목적이 있으므로, 단기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장기적이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사례를 통해 보통 연령대가 낮을수록 한국어 학습의 속도가 빠르며, 초등교육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단조로워 정규과정으로의 편입이 성공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등과정 이상의 경우 교과목이 복잡하고 교육 내용도 어려워 10대 후반의 중도입국 청소년이 정규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다. 10대 후반의 중도입국 청소년의 교육공백 혹은 단절의 비율이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판단된다. 이들 중 일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정규교육과 취업교육이 병행하는 형태의 ‘다습학교’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0), 《다문화가정 동방·중도입국 자녀 교육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연구 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2010), 《이주아동 교육권 현황 및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 국회 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2011),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 및 과제 진단 토론회》 자료집.
- 신현옥(2010), 다문화 사회와 이주 배경 청소년의 이야기, 청소년 문화포럼 25집 239-248,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 여성가족부(2011), 《20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2011), 《2011 다문화가족지원사업안내》.
- 외국인정책위원회(2011), 《2011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08 ~ 201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한국교육개발원(2010),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입학초기 학교적응 프로그램 - 중도입국 학생》.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immigration.go.kr> “통계월보·통계연보”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201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사례에 대한 토론문

한춘희(부산교육대학교 교수)

다문화가정 자녀 가운데 초·중·고 재학생이 3만 명을 넘어설 만큼 다문화가정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1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은 총 38,890명(초등학생 28,748명(73.9%)·중학생 7,735명(19.9%)·고등학생 2,407명(6.2%))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20,174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3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하지만 이들 자녀의 고교 진학률은 30%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중학생이 100% 가까이 고교에 진학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다양한 이유(문화와 외관상의 차이, 경제형편 등)로 고교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새로운 다문화 정책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을 연구한 것이다. 그 동안 본 연구를 위해 노력하신 분께 감사드리고, 연구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최근 새롭게 등장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대상으로,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외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다가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어머니 혹은 아버지에 의해 성장과정 중에 입국한 청소년을 의미한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절대 다수는 어머니의 국제결혼으로 한국 사회에 이주하였으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 정주할 가능성이 크며,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출생과 성장 초기의 경험이 외국에서 있었으므로 한국어를 습득하지 못한 미성년자인 점, 일정기간 어머니(혹은 아버지)와 헤어져 부모 이외의 일가친척에 의해 양육되었다는 점, 출신국과는 판이한 한국 사회의 교육 체계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서 일반적인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대상과는 또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다문화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학계의 심도 있는 연구는 미흡하며, 연구의 기본인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국으로 이주하고 있다. 즉, 한국인 아버지(혹은 어머니)의 양자로 입양되는 것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어머니(혹은 아버지)의 초청을 통하는 방법이다. 입양을 통해 ‘한국인의 양자’ 자격으로 입국할 수

있는 나이는 18세까지 이고 이럴 경우 ‘방문동거(F-1)’ 자격으로, 그 이상의 연령에서는 ‘배우자의 친자녀’의 자격으로 초청을 받아 ‘국민의 배우자(F-2)’ 자격으로 한국에 이주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중도 입국한 5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을 심층 면담을 통하여 연구하고 있다. 각각의 사례 대상자와 대상자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면담을 통해 연구가 이루어졌다. 사례 대상자들은 보통 세 차례 이상 가족 구성원이 변화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신적인 혼란이 성장 과정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인 남성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동의가 이루어진 후(입국된 이후)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사례 대상자들은 거주 기간이 4개월에서 97개월로 다양하며, 다양한 교육(주로 한국어 교육과 한국사회 적응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등)에 참여하고 있다. 사례 대상자4의 경우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이주한 후 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인 어머니의 초청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으므로 공식적인 다문화가족지원 대상은 될 수 없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끝으로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한국사회의 적응에 실패하고 학교 밖에서 배회하는 것은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의 부재이다. 따라서 다양한 한국어교육 실시와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마련,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장기적인 프로그램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적응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도입국 청소년도 개인이 처한 상황과 필요한 요구들이 각각 다르므로 일률적인 적응 프로그램이 아니라 개인별로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중도입국 청소년 연령이 10대 초반은 한국어 교육과 정규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10대 후반의 경우에는 한국어 교육과 취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다솜학교’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이다. ‘다솜학교’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언어, 문화,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과정의 대안학교로, 고교 졸업학력을 인정받는 동시에 기능사 수준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모국어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구촌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 적응을 위한 한국어뿐만 아니라

모국어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모국어를 통하여 자부심도 높이고, 한국어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성장하여 미래에 글로벌 인재로 육성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앞으로 글로벌 경영환경 아래서 가장 필요한 인재는 다문화 인재가 될 것이다.

셋째, 공식적인 제도교육(초중고교육)을 받고자 하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교육의 사각 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다문화가정(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가정, 북한이탈주민) 교육 대상에도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중도입국 청소년들에 대한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사례연구와 심층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의 있는 다문화가정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들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이 향후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끌어가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린 마음과 따뜻한 시선을 가져야 한다.

별첨 : 유관기관 연락처

중앙정부의 유관기관

● 중앙 정부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02-2125-9747	서울시 중구 무교로 6 금세기 빌딩 (을지로 1가)
	차별조사과	02-2125-9651	
	침해조사과	02-2125-9656	
법무부	체류정책팀	02-500-907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사회통합팀	02-500-9155	
	조사집행팀	02-500-9098	
	외국국동포팀	02-500-9184	
	국적난민팀	02-500-9217	
	인권지원팀	02-2110-3643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02-2110-71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정책팀	02-3704-9725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02-2023-8617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140-2)
	사회통합전략과	02-2023-8241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02-2100-3662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여성부	권익기획과	02-2075-4654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 플레이스

● 주한 대사관

국명	전화번호	주소
방글라데시	02-796-4056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310-22
캄보디아	02-3785-1041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53-110
중국	02-738-1038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54
에콰도르	02-739-2401	서울시 종로구 팔판동 141
인도네시아	02-783-567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5
일본	02-2170-5200	서울시 종로구 중학동 18-11
카자흐스탄	02-394-9716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84-24 북악빌리지 11호
말레이시아	02-795-9203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4-1
몽골	02-794-1350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33-5
미얀마	02-790-3814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3-1
파키스탄	02-796-8252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124-13
페루	02-757-1735	서울시 중구 충무로1가 255-5 고려 대운각센터 2002호
러시아	02-318-2116	서울시 중구 정동 34-16
스리랑카	02-735-2966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교보빌딩 2002호
태국	02-795-3098	서울시 중구 한남동 653-7
우크라이나	02-790-5696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1-97
우즈베키스탄	02-574-6554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76-1 외교센터 701
베트남	02-739-2065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28-58
타이베이대표부	02-399-2748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6층
일본총영사관	051-465-5101	부산시 동구 초량동 1147-11
러시아총영사관	051-441-9904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89-1 외은행빌딩 8층
중국총영사관	051-743-7990	부산시 해운대구 우 2동 1418
일본총영사관	064-742-9501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977-1
타이베이부산지부	051-463-7964	부산시 중앙동 중구 4가 25 동방빌딩 9층
키르기스스탄영사관	02-379-0951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22

부산 · 경남지역 유관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부산인권사무소	051-710-9716	부산시 연제구 중앙로 1992 국민연금부산회관 7층
광주인권사무소	062-710-9710	광주시 동구 제봉로 316 (대인동 7-12) 광주은행 6층
대구인권사무소	053-212-7000	대구시 중구 동인2가 50-3(국채보상로 545) 호수빌딩 16층

● 부 · 경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051-461-3030~4	부산시 중구 충장로 14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울산출장소	052-261-7545	울산시 남구 장생포고래길 534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감천출장소	051-254-3917	부산시 서구 원양로 21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055-222-9272	경상남도 마산시 월포동 2-6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거제출장소	055-681-2433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1로 214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사천출장소	055-835-4088	경남 사천시 동림동 181-29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통영출장소	055-645-3494	경남 통영시 동호동 171-10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	051-979-1321	부산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 부산지역 영사관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일본총영사관	051-465-5101	동구 초량동 1147-11
러시아총영사관	051-441-9904	중구 중앙동 4가 89-1 외은행빌딩 8층
중국총영사관	051-743-7990	해운대구 우 2동 1418
타이베이부산지부	051-463-7964	중앙동 중구 4가 25 동방빌딩 9층

부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기관

● 자치단체 : 시·군·구

기관명		추진 사업	전화번호	주소
부산시청	여성정책담당관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총괄	888-2992	연제구 중앙대로1001
금정구청	복지지원과	출산용품지원, 건강검진, 자조모임	519-4362	금정구 부곡3동 78
남구청	주민복지서비스과	멘토멘티, 의료비감면, 한국요리교실	607-4352	남구 대연6동 1268-1
동구청	주민복지과	생활적응 현장학습, 문화탐방	440-4352	동구 수정2동 806-74
동래구청	주민서비스과	정보화교육	550-4354	동래구 복천동 381
북구청	주민복지과	성폭력예방교육,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자 자녀 무료보육지원	309-4352	북구 구포2동 1124-1
	기획감사실	컴퓨터교실	309-4301	
	행정지원과	봉사단체와 결혼이민자가정 결연	309-4116	
사상구청	복지서비스과	세계의 며느리, 친정어머니되기, 생활요리교실	310-4362	사상구 학감대로 242
사하구청	주민서비스과	외국인여성 전통놀이 한마당	220-5574	사하구 당리동 317-16
서구청	기획감사실	컴퓨터교실	240-4301	서구 토성동4가 2-3
	복지서비스과	다문화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240-4352	
수영구청	복지서비스과	정보화교육	610-4351	수영구 남천2동 148-15
연제구청	복지사업과	출산축하금 지원	665-4365	연제구 연산2동 822-7
	평생학습과	아시아음식문화전, 송년의 밤 행사	665-4835	
영도구청	전략사업추진단	글로벌가족간담회, 지구촌음식 페스티벌	419-5631	영도구 청학2동 48-3
진구청	복지사업과	한국어교실, 친정어머니 결연사업	605-4362	부산진구 부암1동 666-16
해운대구청	행복나눔과	결혼이민자여성 유대맺기	749-4352	해운대구 중1동 1378-95
	경제진흥과	한국어교실, 영어생활소식지 발행	749-5682	
기장군청	복지사업과	고국방문사업, 결혼비용지원	709-4373	기장군 기장을 기장대로 560

● 주민자치센터 31개소

기관명	추진사업	전화번호	주소
보수동	한국어·컴퓨터교육, 전통문화 체험, 상담	600-1114	중구 보수동
남부민1동	결혼이민자 일자리 알선(영어강사 등)	240-6601	서구 남부민1동
총무동	한국어·생활과학교육, 명절 선물나누기	240-6581	서구 총무동
신선동	한국어교육, 김장담그기, 문화체험활동 등	419-5604	영도구 신선동
청학2동	한국어교육, 문화체험활동 등	419-5712	영도구 청학2동
범천4동	한국어 교육(중급)	605-6982	부산진구 범천4동
전포1동	한국어 교육(초·중급)	605-6642	부산진구 전포1동
부전2동	한국어 교육(초급)	605-6521	부산진구 부전2동
당감3동	한국어 교육(초급), 외국인 여성 효도잔치	605-6783	부산진구 당감3동
가야1동	한국어 교육(초급), 명절음식만들기	605-6827	부산진구 가야1동
초읍동	한국어 교육(초급), 문화체험활동 등	605-6581	부산진구 초읍동
개금1동	한국어 교육(초급)	605-6881	부산진구 개금1동
대연2동	한국어 교육(초급)	607-4802	남구 대연2동
용호1동	한국어 교육(초급)	607-4807	남구 용호1동
감만1동	결혼이민여성 원어민 영어교실	607-4812	남구 감만1동
감만2동	한국어 교육(초급)	607-4813	남구 감만2동
구포2동	한국어 교육(초·중급), 명절음식만들기 등	309-4902	북구 구포2동
덕천1동	한국어 교육(초급)	309-4906	북구 덕천1동
만덕1동	Global 자매	309-4909	북구 만덕1동
우2동	한국어 교육(초급)	749-5821	해운대구 우2동
반여2동	한국어 교육(초급)	749-5911	해운대구 반여2동
반송2동	한국어 교육(초·중급)	749-5951	해운대구 반송2동
반송3동	문화탐방	749-5961	해운대구 반송3동
신평2동	한국어 교육(초급)	220-5167	해운대구 신평2동
장림1동	한국어 교육(초급)	220-5184	사하구 장림1동
다대1동	한국어 교육(초급), 풍물놀이교실	220-5226	사하구 다대1동
남산동	한국어 교육(초·중급), 한국문화체험	519-5384	사하구 남산동
서4동	한국어 교육(초급)	519-5161	금정구 서4동
연산1동	한국어 교육(초급)	665-4905	연제구 연산1동
연산2동	한국어 교육(초급), 역사유적지 탐방 등	665-4906	연제구 연산2동
주례3동	한국어교육(수준별), 모국유학생과의 만남, 멘토·멘티 결연하기, 맞춤형일자리 제공	310-4912	사상구 주례3동

● 종합사회복지관

기관명	추진사업	전화번호	주소
동구	컴퓨터교실, 친정엄마만들기, 문화체험	633-3367	동구 범일4동 1542-1
부산진구	한글교실, 출산도우미 파견	893-0035	부산진구 개금동 산 57-9
전포	한국음식만들기	802-6383	부산진구 전포1동 343-5
동래	한글컴퓨터교실, 자조모임, 다문화축제	531-2460	동래구 명장2동 508-72
사직	한글교실, 상담, 자녀양육, 부모교육	506-5757	동래구 사직2동 594-8
남구	한글교실, 예비다문화가족교육, 다문화위기가정 지원사업, 자조모임	647-3655	남구 우암1동 129-339
용호	요리교실, 결혼이민자가정 청소년상담	628-6737	남구 용호3동 36-7
화정	한국어교실, 상담, 건강관리, 친정엄마 만들어주기, 다문화소식지 발간	362-0111	북구 금곡동 1108
장선	한글교실, 문화유적지탐방, 등반대회	336-7007	북구 구포3동 1255-2
화명	결혼이주여성 요리만들기	338-2233	북구 화명동 2310
덕천	한국어교육, 노래교실	331-4674	북구 덕천3동 808
남산정	다문화가정 명절맞이행사, 고향보내기	342-8207	북구 덕천1동 814-1
영진	한국어·컴퓨터교육, 가족간담회	529-0005	해운대구 반여1동 1247
기장군	컴퓨터교육	709-4351	기장군 기장을 대라리 175-3
강서구	한국어교육, 문화체험, 가족지원	972-4591	강서구 대저1동 1549-1
중구	한글교실, 생활교육, 글로벌파티	464-3147	중구 대청동 4가 75-7
서구	멘토링, 부모 및 부부교육	253-1922	서구 동대신동 1가 11-33
부산기독교	취업교육, 친정부모되기, 문화체험	257-9704	서구 토성동 2가 4
금정구	자조모임을 통한 사례관리	532-0115	금정구 금사동 545-22
남광	컴퓨터교육, 멘토멘티사업	508-1997	금정구 노포동 산15
백양	한글교실, 전래동화 독서교실	305-4286	사상구 모라3동 75
모라	컴퓨터교실	304-9876	사상구 모라3동 520-1

● 보건소

기관명	추진사업	전화번호	주소
서구	결혼이민자 임신부, 영유아 건강관리	240-4869	서구 부용동2가 86
동구	임산부 등록, 산전후 교육, 철분재보급	440-4794	동구 수정2동 806-74
부산진구	결혼이민자 건강검진	605-6038	부산진구 범천1동 849-10
동래구	임산부건강관리, 영유아 관리	550-6771	동래구 명륜동 702-54
북구	임산부등록,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309-4928	북구 화명동 1531-4
해운대구	다문화가정 건강교실	749-7525	해운대구 좌동 1339
사하구	출산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	220-5419	사하구 신평2동 647-5
연제구	건강검진	665-4791	연제구 연산2동 1555
사상구	임산부 건강관리	310-4817	사상구 감전동 138-8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여성회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10-2027	남구 대연3동 38-1
여성문화회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20-8342	사상구 학장동 168-2
사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5-8345	사하구 신평동 262-24
부산여성개발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23-0419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175-3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30-3407	북구 금곡동 291-1 부산여성가족개발원 3층
부산진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817-7313	부산진구 전포2동 653-14
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802-2900	부산진구 전포1동 341-2
해운대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02-8002	해운대구 양운로 110번지 좌1동 주민센터 2층
동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06-5766	동래구 사직2동 594-8번지

부산지역의 지원기관

● 법률상담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부산광역시 여성회관	610-2027	남구 대연3동 38-1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864-2603	연제구 연산5동 2063-15 3층
어울림-이주여성다문화가족센터	802-3439	진구 전포2동 193-9 송광Hits 4층
부산여성 1366센터	051-1366	금정구 노포동 133 부산여성 1366센터
한국가정법률 부산상담소	469-2987	동구 초량3동1158-7YWCA회관 3층
부산여성회	504-6638	동래구 온천3동 1441-17 동원빌딩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803-9181	부산진구 전포2동 608-1 신우빌딩 413호
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363-3838	북구 덕천1동 388-1 대방아파트상가 305호

● 가정폭력상담소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부산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469-2987	동구 초량3동 48-1 한국화장품 1층
중부산 가정폭력상담소	462-7177	중구 중앙동2가 24-3 명성빌딩 303호
희망의전화가정폭력상담소	623-1399	남구 대연3동 16-5 원자빌딩 5층
울타리 가정폭력상담소	325-1366	사상구 괘법동 534-24
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363-3838	북구 덕천1동 386-10 세방빌딩 5층
사하 가정폭력상담소	205-8296	사하구 괴정1동 493-9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558-8832	동래구 명륜1동 533-230
강서 가정폭력상담소	941-1366	강서구 녹산동 184
연제 가정폭력상담소	853-3638	연제구 연산5동 2063-15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624-5583	수영구 남천1동 69-3
부산여성폭력예방상담소	752-0871	수영구 광안3동 1060-8
한사랑 가정폭력상담소	581-0401	금정구 남산동 320-16

보통가정치유상담소	644-0091	부산진구 범천2동 1284-50
동래 가정폭력상담소	531-1366	동래구 명륜동 533-230 울곡빌딩 6층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817-4344	부산진구 전포2동 653-14

● 기타상담소

기관명	연락처	주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1577-1366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247-8292	서구 토성동 3가 18-2번지 2층
이주민과 함께	802-3483	부산진구 전포2동 193-9 송광빌딩 4층
양지터	545-9272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부산여성회	202-8289	동래구 온천3동 1441-17
부산카톨릭 노동상담소	293-6403	부산시 사하구 신평1동 259-1
삼산거주외국인지원협회	1600-3578	부산시 사상구 과법동 550-19
수영로 외국인의 집	906-4614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1008-4 올림픽타운 빌딩 707호
카톨릭 이주노동자상담소	807-6403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1동 417-4 서면성당내

● 취업지원 및 직업교육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860-1919	부산진구 양정2동 150-3 1~5층
부산동래종합고용지원센터	559-2500	동래구 명륜동 510-6 대한생명빌딩 6층
부산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330-9900	북구 화명3동 2270-3 센터빌딩
부산시 여성회관 여성취업정보센터	610-2021	남구 대연3동 38-1
부산시 여성문화회관 여성취업정보센터	320-8341	사상구 학장동 168-2
사하 여성창업지원센터	263-3023	사하구 구평동 125-23
한국산업인력공단	330-1831	북구 금곡동 1877
부산상공회의소	990-7041	부산진구 범천1동 853-1
부산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503-7268	동래구 온천3동 1442-1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807-7944	부산진구 부전1동 467-1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702-9199	해운대구 좌1동 1464-3 명정빌딩

● 보호시설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여성의 쉼터	817-6464	연제구
평화여성의 집	248-0833	서구
해봄터	817-6464	연제구
제2여성의 집	545-9294	해운대구
사랑의 집	583-7735	금정구

● 모자보호시설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다비다모자원	244-2508	서구 서대신동 3가 147
마리아모자원	504-2456	연제구 거제2동 802-3
안나모자원	241-2421	서구 서대신동 3가 7-23
은애모자원	241-1133	서구 암남동 산 169-1
청학모자원	403-6515	영도구 동삼1동 521-14
한나모자원	293-3800	사하구 괴정2동 3-1
성현여성의 집	545-9272	해운대구 반송동

● 교육기관(학교)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부산일본인학교	753-4166	수영구 민락동 173-8
부산화교초등학교	467-0274	동구 초량1동 589
부산화교중고등학교	467-0273	동구 초량1동 548-2
부산국제외국인학교	742-3332	기장군 기장읍 내리 798
부산외국인학교	747-7199	해운대구 좌동 1366-3
아시아공동체학교	633-1381	남구 문현4동 1003-1

● 청소년지원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부산시 다문화청소년 종합지원협의체	852-7583	부산진구 양정2동 260-5 양정청소년수련관 2층
부산진구 청소년 지원센터	868-0950	부산진구 양정2동 260-5
양정 청소년 수련관	868-0750	부산진구 양정2동 260-5
부산시청소년쉼터	756-0924	수영구 민락동 165-7
청소년종합지원센터	303-9601	사상구 덕포동 247-6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333-0729	북구 만덕2동 289-1
사상구 청소년 수련관	316-2214	사상구 모라2동 1365-1
부산시교육청 대안교육지원센터	744-2931	해운대구 우1동 640-24 국제빌딩 12층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510-1234	금정구 장전동 산30 교수회관

● 한국어교육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동명대학교 언어교육원	629-3513	남구 용당동 535
경성대학교 한국어학당	620-4063	남구 대연3동 314-79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	200-6342	사하구 하단2동 840
동의대학교 외국어교육원	890-1770	부산진구 가야동 산 24
부경대학교 외국어교육원	629-6843	남구 대연3동 599-1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언어교육원	510-3301	금정구 장전동 산 30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640-3231	남구 우암동 산 55-1
영산대학교 한국어학당	540-7104	해운대구 반송 3동 249
(사)부산국제친선협회	866-3551	부산진구 양정 2동 127-3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학원	513-0131	금정구 장전 1동 38-12
부산시 자원봉사센터 한국어강좌프로그램	864-1365	부산진구 양정2동 27-20 상수도사업본부 10층
다문화가정 e배움캠페인	02-6361-1962	http://e-campaign.kdu.edu/
EBS 한국어교육	1588-1580	http://home.ebs.co.kr/home5894/index.html
한국어 세계화재단	02-2669-9788	http://www.qlokorean.org
재외동포재단 TeenKorean	02-3463-6500	http://www.teenkorean.net
이주민한국어교육정보센터	-	http://www.migrantskorean.org

● 연구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510-3827	금정구 장전동 산30 성학관 703호
부산여성가족개발원	330-3400	북구 효열로 218
부산발전연구원	860-8600	부산진구 양정동 273-20 상수도사업본부 8층
영산대학교 IKSP사업단	540-7087	해운대구 반송 3동 249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999-5397	사상구 괘법동 산1-1
동아대학교 지식자원개발센터	240-8551	서구 부민동 2가 5-1
동의대학교 부산다문화사회통합센터	890-1128	부산진구 영광로 995 동의대학교 본관 4층
부산국제교류재단	865-0133	연제구 연산5동 1000 부산시청 1층

● 생활 전화번호 안내

긴급 신고 특수 번호		국제정보신청	00795
범죄신고	112	국제수동통화신청	00799
간첩신고 및 대공상담	113	생활안내 특수번호	
화재구급, 구조 및 응급환자 신고	119, 1339	출입국업무 상담	1345
상수도 고장신고	121	BBS 통역서비스	1588-5644
전기고장신고	123	전화시간안내	116
밀수신고	125	각사군 민원안내	120
마약사범신고	127	일기예보	131
환경오염신고	128	법률구조상담	132
사람·차량 행방 문의	182	관광정보	134
전화이용 특수번호		감사원 신고센터	188
한국통신 고객상담센터	100	우체국 민원안내	1300
전화고장신고	110	여성상담전화	1366
전화번호안내	114	청소년 보호전화	1388
수신자 부담 시외전화	1541	국민건강보험 상담전화	1577-1000
일기예보	131	국민건강보험 상담 외국인 전용	02-390-2000
정보신청	115	학교폭력 신고상담	1588-2828

부산 · 경남지역 민간단체

기 관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사)이주민과 함께	051-802-3438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193-9 송광빌딩 4층
(사)이주민과 함께 부설 어울림	051-802-3439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193-9 송광빌딩 4층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051-257-8297	부산시 서구 토성동3가 272번지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051-865-2603	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 1441-1
가톨릭이주노동자상담소	051-441-6403	부산시 중구 대청동 4가 81-1 가톨릭센터
부산여성회	051-504-6638	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 1441-17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051-803-9181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608-1 신우빌딩 413호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051-864-2603	부산시 연제구 연산5동 2063-15 3층
부산인권상담센터	051-722-6182	부산시 연제구 연산2동 844-20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부산센터	051-508-1366	부산시 연제구 거제2동 1330 부산의료원내
이주민문화센터	051-803-2808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542-3
부산글로벌센터	1577-7716	부산시 연제구 중앙로 1992 국민연금공단13층
부산 가톨릭 노동상담소	051-293-6403	부산시 사하구 신평1동 259-1
사)노동인권연대	051-803-8746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1동 474-78 3층
사)여성문화인권센터	051-363-3838	부산시 북구 덕천1동 388-1 대방아파트상가 305호
삼산거주외국인지원협회	1600-3578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550-19
수영로 외국인의 집	051-906-4614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1008-4 올림픽타운 빌딩 707호
가톨릭 이주노동자상담소	051-807-6404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1동 417-4 서면성당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051-816-8633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193-9 4층
한국외국인선교회 부산지부	051-971-7687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1715-7 톨마트 5동 213호
김해이주민지원센터	055-324-8227	경남 김해시 외동 543-2 천주교 부산교구 김해이주민지원센터(임호성당내)
김해YMCA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055-328-3300	경남 김해시 봉황동 404번지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055-277-8779	경남 창원시 팔용동 152-7번지 경남이주민사회센터
천주교 마산교구 이주노동자상담소	055-275-8203	경남 창원시 신월동 13-67
창원외국인 노동자의 집	051-990-7041	경남 창원시 내동 현대상가 309호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055-388-0988	경남 양산시 북부동 533번지 양산종합운동장 1층 167호
울산이주민센터	052-297-1281	울산시 북구 양정동 523-4
사천이주노동자센터	055-754-1285	경남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600-1

이주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심포지엄

인 쇄	2011년 11월
발 행	2011년 11월
발행인	현 병 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주 소	(611-70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1992 국민연금부산회관 7층
전 화	(051)710-9713
F A X	(051)710-9717
Homepage	www.humanrights.go.kr
인쇄처	연합기획
전 화	(051)631-3684
F A X	(051)634-7180

발간등록번호 11-1620075-000003-01